BrainKorea21PLUS

BK21 플러스 사업
사업관리운영 매뉴얼

2016. 9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NRF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발간취지 >

○ 이 매뉴얼은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내용을 **사용자 편에서 알 수 있도록 요약·정리**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과 사업비의 효율적·합리적 집행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BK21 플러스 사업의 규정에 따른 각 단계에서의 업무처리내용에 대한 주요 사례를 제시하고 사업비의 책임 있는 사용과 관리에 대하여 알기 쉽게 안내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 내용은 BK21 플러스 사업 인터넷 홈페이지(http://bkplus.nrf.re.kr)의 "자료실"에 수록되어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 또는 궁금하신 점 등 관련 내용은 BK21 플러스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table>
<tr><th colspan="3">업무 담당</th><th rowspan="2">연락처(042-869-)</th></tr>
<tr><th>구분</th><th colspan="2">해당업무</th></tr>
<tr><td>총괄</td><td colspan="2">BK21 플러스 사업 총괄</td><td>6441</td></tr>
<tr><td>기획</td><td colspan="2">세부 운영·관리계획 수립, 성과컨설팅 등</td><td>6449</td></tr>
<tr><td rowspan="9">사업관리</td><td colspan="2">사업관련 규정(훈령, 지침 등) 제·개정</td><td>6449</td></tr>
<tr><td colspan="2">협약체결·사업비 교부</td><td>6399</td></tr>
<tr><td colspan="2">참여교수 관리(등록, 변경 등)</td><td rowspan="2">6951/6429</td></tr>
<tr><td colspan="2">참여인력(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관리</td></tr>
<tr><td colspan="2">행·재정컨설팅, 현장점검</td><td>6951</td></tr>
<tr><td colspan="2">종합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td><td>6951</td></tr>
<tr><td colspan="2">우수성과 관리(포상, 전시, 홍보 등)</td><td>6447</td></tr>
<tr><td colspan="2">Q&A 관리(사업비 집행/정산 제외)</td><td>6444</td></tr>
<tr><td colspan="2">사업비 집행/정산</td><td>6373</td></tr>
<tr><td rowspan="11">유형별
담당자</td><td rowspan="8">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td><td>자연과학</td><td>6399</td></tr>
<tr><td>공학</td><td>6951</td></tr>
<tr><td>농·생명·수산·해양</td><td rowspan="2">6444</td></tr>
<tr><td>의약학</td></tr>
<tr><td>인문학</td><td rowspan="2">6447</td></tr>
<tr><td>사회과학</td></tr>
<tr><td>디자인·영상</td><td rowspan="3">6449</td></tr>
<tr><td>과학기반 융복합</td></tr>
<tr><td>인사기반 융복합</td></tr>
<tr><td colspan="2">글로벌인재양성형</td><td>6399</td></tr>
<tr><td colspan="2">특화전문인재양성형</td><td>6449</td></tr>
</table>

[목 차]

Ⅰ. BK21 플러스 사업 일반현황 ····· 5
1. BK21 플러스 사업 개요 ····· 8
Ⅱ. 용어의 정의 및 권한과 책임 ····· 15
1. 용어의 정의 ····· 15
2. 사업수행주체의 권한과 책임 ····· 16
Ⅲ. 사업의 구분 및 사업연도 ····· 17
1. 사업의 구분 ····· 17
2. 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 17
Ⅳ.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공고 ····· 18
1. 사업계획 수립/통보 및 승인 ····· 18
2. 사업시행계획 공고 ····· 18
Ⅴ. 사업 운영체계 ····· 19
1. 전문기관의 역할 ····· 19
2. 사업관리 전담조직 ····· 19
Ⅵ. 협약체결·변경·해지 ····· 20
1. 협약의 체결 ····· 20
2. 협약의 변경 ····· 20
3. 협약의 해지 ····· 21
Ⅶ.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23
1. 사업비의 충당 ····· 23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23
3. 사업단의 회계 및 계정 ····· 23
4.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24
5. 사업비의 집행 ····· 24
6. 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 24
7. 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 24
8. 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 25

※ 예산업무 매뉴얼 : 사업비(예산) 집행 및 관리 업무 세부내용 ····· 26
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26
Ⅱ. 예산 편성 및 변경 ····· 28
Ⅲ. 항목별 집행방법 ····· 32
Ⅳ. 이월액 및 결산보고 등 관리 ····· 56

Ⅷ. 사업점검 및 평가 ····· 57
1. 수시점검 ····· 57
2. 자체평가 ····· 57
3. 연차점검 ····· 58
4. 중간평가 ····· 58
5. 종합평가 ····· 58

6. 이의제기 ····· 59
7.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59
8. 자료 등의 요청 ····· 59
Ⅸ. 사업단 구성 및 관리 ····· 60
1. 참여교수 ····· 60
2. 참여제한자 ····· 60
3. 참여대학원생 등 ····· 61
4. 신진연구인력 ····· 62
5. 산학협력 전담인력 ····· 63
Ⅹ. 행정사항 및 성과관리 ····· 64
1. 지침의 제정 ····· 64
※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지침 주요내용 설명 ····· **64**
Ⅰ. 총칙 ····· **64**
Ⅱ. 참여대학의 의무 ····· **67**
Ⅲ. 사업단(팀)의 구성 및 운영 ····· **70**
Ⅳ.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102**
Ⅴ.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104**
Ⅵ. **행정사항 및 보칙** ····· **105**
Ⅶ. **부칙** ····· **107**
2. 홈페이지 운영 ····· 108
3. 보고의무 ····· 108
4. 기타 ····· 108
5. 유효기간 ····· 108

【부 록】 관련규정
1.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 109
2.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지침 ····· 131
3.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151

Ⅰ. BK21 플러스 사업 일반현황

BK21 사업 추진 (1단계 : '99~'05년 / 2단계 : '06~'12년)

▢ 추진 배경 및 목적

< BK21사업 추진 배경 >

'98년 당시 고등교육의 현실

○ **대학의 학술연구 수준 취약**
- 국제적 학술연구수준(SCI 기준) : 논문 발표 국가 순위 16위('98년)
  ※ 미국의 3.9%, 영국의 13.8%, 일본의 15.2%, 독일의 15.5% 수준

○ **낮은 우리대학 국제 경쟁력 평가**
- 서울대: 아시아권 대학 중 3위('99 Asia Week)
- 인적자원 국제경쟁력 평가 : **47개국 중 최하위** ('99 IMD 보고서)

1단계 BK21 사업 추진

○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집중육성」과 『지역 대학 특성화』를 통한 고등인력양성체제 구축**

○ **대학교육개혁과 연계 추진**
- 학사과정 정원감축, 대학원 문호개방, SCI급 논문 게재 의무화 등

○ **세계수준의 대학원 및 지역대학 육성(연 2,000억원)**
- 과학기술(900억).인문사회(100억).지역대학육성(500억), 대학원 전용시설(500억)

○ **대학원 연구력 제고(연 495억원)**
- 특화(110억).핵심(385억).신규분야(173억)

2단계 BK21 사업 추진

○ **세계수준의 연구집단 집중 육성**
- '06년부터 매년 우수 석박사 인력 2만명 이상 지원
  ※ 세계수준 우수 대학원 : 약 15,000명/연, 지역 우수대학원 약 5,500명/연

○ **대학 교육•연구력 제고 기반 확충**
- '12년까지 세계 수준의 분야별 연구중심대학 10개 육성
  ※'12년까지 국가 SCI급 논문 순위 10위권 진입

○ **지역혁신을 선도할 지방대학원 육성**
- **'12년까지 대학→기업 지식이전 세계 10위권 도달**
  ※ 대학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 비율 : 10.1% (04)→20%(12)

▢ BK21 사업의 성과와 한계

○ 1단계 BK21 사업

- 사업 성과

- **연구중심대학 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학부정원 감축, 대학원 문호개방, 연구비 중앙관리제, 유사학과 통합, 교수업적평가제 도입, 교원확보율 등을 진입 조건화 하고 향후 평가에 반영
- **대학 연구력의 획기적 증대 및 경쟁 분위기 조성**

※ **그룹형 재정지원사업(Blocking Funding) - BK21사업**
⇒ 대학원 프로그램의 양적.질적 수준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합 모델 (1단계 BK21사업 벤치마킹 → 일본(COE사업, 2002년) 및 독일(Excellence Initiative, 2006년))

  ☞ **SCI급 논문 : 3,765편('98, 세계 18위) → 7,477편('03, 세계 13위)**
-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국제경쟁력 있는 석.박사인력 배출**
  ☞ 김민철(경상대)→독일 Max Plank연구소, 장갑수(연세대)→캐나다 Saskatchewan대 조교수
- 해외연수 지원으로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감각 배양 일조**
  ☞ 해외 장기연수 1,900명, 단기연수 30,000명, 세계적 석학 초빙 3,200명

- 한계 및 문제점

- R&D 성과 및 SCI 논문 평가에 치중하여 **인력양성 목표관리와 산학협력 성과 미흡**
- 지원분야 및 사업단 수 제한에 따른 **기초** 및 학제적 **분야에 대한 지원 부족**
- 지역기반 특성화 유도 부족으로 **수도권/지방大 간 연구력 격차 심화** ※ **수도권 집중도(대학원과정)** : 과학기술 68%, 인문사회 95%

○ 2단계 BK21 사업

- 사업 성과

- **대학 연구역량 및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
  ☞ QS 세계 대학평가 200위권내 대학 수 : **('07)2개 → ('12)6개**
- 대학원생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연구기반 강화 및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기여
  ☞ 특히, 자연과학·공학 등 공동연구를 필요로 하는 분야 및 소규모 사업팀의 연구성과가 높게 나타남

- 한계 및 문제점

- 사업단 예산집행의 자율성 부족,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로 질적 수준 제고에 한계
  ☞ 우리나라 SCI논문 순위 : ('99)18위 → ('06)13위 → ('11)11위
  ☞ 우리나라 SCI논문 피인용횟수 순위 : ('02) 33위 → ('05) 30위 → ('11) 30위
- 획일적인 방식의 평가·지원체계로 **창의적 고급인재 양성에 한계**

▢ BK21 플러스 사업의 추진 필요성

○ 창조경제를 주도할 "석박사급 최고급 창의인재" 양성 절실

-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할 신기술창출분야, 독창성 있는 인문사회분야, 문화콘텐츠, 디자인, BIT, NIT 등 융복합 분야를 주도할 국내 최고급의 창의적 석박사 인력 양성·공급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

○ 대학 교육·연구의 창의적 분위기 제고 및 독창성 있는 성과 창출의 허브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 필요

- 그동안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역량이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학의 교육·연구 성과가 관련 산업의 신기술 등으로 연계되어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을 이끄는데 한계

※ 우리나라 SCI논문 순위 : ('99)18위 → ('06)13위 → ('11)11위

※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IMD) : ('10)46위 → ('11)39위 → ('12)42위

1. BK21 플러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창조경제를 실현할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

< BK21 플러스 사업의 비전과 목표>

BK21 플러스 사업('13 ~ '19) 추진목표

○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

– QS 대학평가 200위권내 대학 수 : 6개('12) → **11개**('19)

※ '12년 QS 국내대학 평가결과 : 200위권내 6개, 300위권내 8개, 400위권내 11개

○ 학문분야별 핵심 고급인력 및 융복합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

– 7년간('13~'19) 매년 우수 석박사 인력 약 **15,000명** 및 신진연구인력 지원

○ 국내 대학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 SCI급 논문 피인용지수 순위 : 30위('11) → **20위**('19)

– 창의적 교육과정 구성

▢ 기본방향

1 대학원 교육·연구의 질 제고로 연구중심대학 기반 강화

○ 질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유도로 **대학원 교육·연구의 질 제고**

2 지방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비중 확대** 및 **중소기업 등 지역산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연구역량 및 역할 강화

※ 지방대학 지원 비중 확대 (KAIST 등 5대 과기대 제외)

: BK21, WCU 전체 사업비의 약 **24%** → BK21플러스 전체 사업비의 **35% 내외**

: BK21, WCU 전체 사업단(팀) 수의 약**35%** → BK21플러스 전체 사업단(팀) 수의 **45% 내외**

3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밀착형 석박사급 인재 양성

○ 대학원 교육·연구와 관련 산업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현장밀착형 지식과 기술 지원 및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실적 및 계획 평가 반영

4 특화 분야의 융합형 고급 전문인력 양성 지원

○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산업·공업·패션디자인, 관광, 정보보안 등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특화된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유형 신설

5 대학원 질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 향후 발표할 **대학원 질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15년 사업 구조를 개편**

○ 2년간 추진실적 및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16년 지원 사업단 전면 재선정**

6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단가 현실화

○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 지원단가를 상향시킴으로써 대학원생들이 생활 걱정없이 교육·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석사 월50만원→**60만원**, 박사 월90만원→**100만원**, 신진연구자 월200만원→**250만원**

▢ BK21 사업 대비 개선 방향

	성과 및 한계	BK21 플러스 사업 개선방향
인재 양성	▪ (성과) 핵심분야 우수 인재 양성 ▪ (한계) – 연구장학금액 단가 현실화 필요 –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 여전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강화** ▪ 창의적 **융복합분야 지원 확대** ▪ **지방대학 지원비중 확대**
연구 경쟁력	▪ (성과) 연구의 **양적** 성장에 기여 ▪ (한계) –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미흡 – **학문분야별** 특성 고려 미흡 – 사업단 대형화로 사업단 관리 및 연구성과 제고 미흡	▪ **질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 학문분야별, 사업유형별로 지원방식, 지원내용 **차별화로 독창성·창의성 유도** ▪ **소규모** 사업팀에 대한 지원 **확대**
국제화	▪ (성과) **국제 인지도 향상** ▪ (한계) – 일률적인 방식의 **해외학자 유치활용**	▪ 사업단 특성 및 여건에 맞는 **다양한 국제화 전략** 유도
제도 개선	▪ (성과) 연구대학 **인프라 구축** ▪ (한계) – **하드웨어적** 제도개혁 중점 (모집단위 광역화 등)	▪ **소프트웨어 중심** 제도개선 유도로 **연구중심대학체제 재정비** (학사관리, 교육/연구여건, 연구윤리 등)
평가 관리	▪ (성과) **부진사업단 탈락/신규 사업단 진입** 등 경쟁체제 강화 ▪ (한계) – 단기적·양적 성장 중심의 평가 – 사업단 예산집행의 **경직성**	▪ 단기평가 지양, **중기평가 실시** (연차평가는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 ▪ 예산편성·집행의 **자율성 확대** (대응자금 폐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년 9월 1일~2020년 8월 31일(총 7년간)

○ 추진근거

- 학술진흥법 제7조

>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교육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및 제11조

> **제9조(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융자지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지급범위 및 생활비 융자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①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 지원유형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 학문 전분야 최우수 대학원 육성 및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 글로벌인재양성형 : 융합분야 중심 대학원 국제협력강화 등을 통한 "연구경쟁력 강화" 유도
- 특화전문인재양성형 : 특화분야 "고급 실용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유형별 지원방향 및 지원분야 >

유형	지원방향	지원분야
미래기반창의 인재양성사업	학문분야별 창의적 미래 핵심인재 양성	학문 전분야 (사업단과 사업팀을 분리하여 지원)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미래 국가발전 핵심분야의 대학 교육·연구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융합형 R&D 분야 등
특화전문 인재양성사업	새롭게 부각되는 고부가가치 특화분야 및 국가전략분야 등의 고급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전분야로 하되, 산업·공업·패션디자인,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관광, 정보보안, 특수장비 등 특화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학원 우선 지원

○ 지원조건

- **단일 학과(부) 소속 사업단(팀)장,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사업단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단,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융복합 분야 및 특화전문인재양성형에 한하여 대학원의 단일 학과(부) 외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된 "학과간 협동과정" 도 사업단 구성 및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일 기준 학과(부) 소속 전체 교수의 70%이상 사업단 참여. 단 사업팀은 예외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분야별 사업 참여교수 최소 기준 수 충족

※ 글로벌인재양성형은 해당 없음. 특화전문인재양성형은 최소 참여교수 수 5명 이상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의 최소 참여교수 수 >

사업단/팀	대분야	중분야	교수 수	비고
사업단	자연과학	수학	10명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공학	정보기술	25명(15명*)	*컴퓨터분야
		기계	15명	
		건설		
		화공	10명	
		재료		
		기타중점		
	의약학	의학	20명	
		치의학	15명	
		한의학		
		약학·수의학		
	농·생명·수산·해양	농생명 등	15명	
	인문학	역사/철학/종교	7명	
		외국어와 문학		
		한국어와 문학		
	사회과학	법/정치/행정	7명	
		경제/무역		
		경영		
		교육		
		사회/인류/심리		
		복지/신방		
		관광/지리/지역개발/체육		
	디자인·영상	디자인·영상	7명	
	과학기술기반 융복합	과기 융복합1, 2, 3	10명	
	인문사회기반 융복합	인사 융복합2	7명	
사업팀			3명	

○ 지원항목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형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전체사업비의 60% 기준 (인문사회, 의·치·한의학, 사업팀 50%)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전체사업비의 40% 기준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전체사업비의 50% 기준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 교육과정 개발비	■ 교육과정 개발비	■ 교육과정 개발비
■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 국제화경비	■ 국제화경비	■ 국제화경비
■ 사업단 운영비 ※ 전체사업비의 10% 이내 또는 3,000만원 이내	■ 사업단 운영비 ※ 전체사업비의 10% 이내 또는 3,000만원 이내	■ 사업단 운영비 ※ 전체사업비의 10% 이내 또는 3,000만원 이내
■ 간접비 (2%이내)	■ 간접비 (2%이내)	■ 간접비 (2%이내)

- 사업참여 대학원생 수는 과학기술분야 사업단은 사업참여 교수 전체 지도학생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인문사회는 참여교수 1인당 석사과정생 2명, 박사과정생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
- 글로벌인재양성사업단 중 기존 WCU사업단과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단 중 신설예정학과 사업단의 경우, 원소속학과에서 지도하던 기존 학생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 (4차년도 (~'17년 2월)까지만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한국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비의 30%(글로벌인재양성형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화경비 등 사업비를 지원함(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미지원)

※ 글로벌인재양성형 : 지원사업비 중 사업단 운영비 15% 이내, 간접비 2% 이내로 편성·집행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특화전문인재양성형 : 지원사업비 중 사업단 운영비 25% 이내, 간접비 2% 이내로 편성·집행

▢ 사업관리

- 교육부 : 사업 기본방향 설정, 사업 성과관리 등
- 사업총괄관리위원회 : 사업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자문
- 한국연구재단 : 평가 및 사업비 집행업무 등을 수탁 받아 수행

▶ 사업관리의 정의 ◀

○ 사업관리란 전략적 사업계획, 효율적 사업수행 및 효과적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의 계획부터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되는 제반업무를 의미함

○ 사업관리의 목적은 우수한 사업성과창출로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임

○ 이와 관련된 사업수행기관의 수행업무에는 사업계획, 사업협약, 사업비 집행, 사업비 정산, 사업평가, 그리고 사업성과 관리 등이 포함됨

관 리 구 분	개 요	주요 업무
사업계획	사업수행기관 차원의 사업계획이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협약을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선행조사 및 사업비전ㆍ추진전략 등을 기획하는 과정	① 사업(기술)동향조사 ② 사업비전 및 추진전략 기획 ③ 사업추진절차ㆍ체계 기획 ④ 사업기대효과 ⑤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협약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과 사업수행기관(또는 사업수행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공식 문서화하는 과정	① 협약 요청, 예산운영계획서 작성 ② 협약 승인 ③ 협약 체결, 협약변경 ④ 사업비 청구 및 지급 수령 확인
사업비 집행	사업 운영관리규정과 사업수행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는 과정	① 사업비 사용내역 관리 ②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
참여인력 관리	사업단(팀)장,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의 교체 또는 변경 과정	① 사업단(팀)장 교체 ② 참여교수 교체, 증원, 감원 ③ 신진연구인력 유지·관리 ④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유지·관리
사업비 정산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 및 주관대학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과정	① 자체정산(사용내역 조사 및 내부 검수) ② 증빙자료 제출 ③ 소명절차 진행
사업평가	정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이 공정성, 전문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수행성과를 평가하거나, 사업수행기관(책임자)을 선정하는 일련의 과정	① 사업공고 ② 신청서접수 ③ 선정평가, 성과평가 ④ 결과통보 ⑤ 이의신청 접수 ⑥ 최종확정
사업성과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한 사업성과물을 효율적으로 수집.관리ㆍ홍보하여 사업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① 성과(논문발표, 특허 출원ㆍ등록 등) 조사 ② 성과종합관리 ③ 추적관리 ④ 성과홍보 및 마케팅 ⑤ 성과 활용확산

II. 용어의 정의 및 권한과 책임

1.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사업단		· 전국 및 지역단위의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형의 사업단위
사업팀		· 전국 및 지역단위의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을 수행하는 소형의 사업단위
전문기관		·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함)이 BK21 플러스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함(훈령 제6조 2항)
주관대학		· BK21 플러스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업단(팀)이 소속된 대학
정산		· 사업단(팀)이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 및 주관 대학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
집행잔액	사용잔액	· 한국연구재단과 협약기간 동안 사업비를 사용한 후 남은 잔액
	정산금액	· 한국연구재단 또는 주관 대학이 정산을 실시하고 부당집행분으로 확정한 금액
집행잔액 종합관리계좌		·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설치.운용하는 금융계좌
발생이자		· 사업비 집행 중에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
수시점검		· 사업단(팀)의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수시로 실시하는 점검
자체평가		·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소속 사업단(팀)에 대한 사업단(팀)장이 실시하는 평가
중간평가		· 대학원 질 개선방안 등과 연계하여 기존 사업단(팀)과 신규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15년도 실시되는 평가 ※ '16년 3월 이후 지원 대상 사업단(팀) 재선정
연차점검		· '16년 재선정 사업단(팀)을 대상으로 중간평가 이후 성과점검을 위해 '18년도 실시되는 평가
종합평가		· 사업단(팀)의 7년간 사업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이 사업 종료 후 실시하는 평가

2. 사업수행주체의 권한과 책임

○ 전문기관의 장

-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제7조에 따른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 제8조에 따른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지원
- 사업단 수시 점검, 선정평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사업 평가·관리·지원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주관기관(사업단이 소속한 대학)의 장

-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단의 장

-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 사업의 총괄 수행
-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알아두면 좋아요

사업수행 주체(훈령 9조)

☞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 및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연구과제 책임자는 사업단의 장을 겸할 수 없음**

※ 다만, 6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예외

☞ **사업단의 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사업단의 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함**

※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름

☞ **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Ⅲ. 사업의 구분 및 사업연도

1. 사업의 구분

▢ BK21 플러스 사업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평가·지원할 때에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함

-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 ❍ 글로벌인재양성형
- ❍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 BK21 플러스 사업의 유형별 지원 분야

- ❍ 사업유형별 지원 분야

<table>
<tr><th>유형</th><th colspan="3">지원분야</th></tr>
<tr><td rowspan="10">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td><td rowspan="10">사업단(팀)</td><td rowspan="1">기초과학</td><td>자연과학(수학, 물리, 화학 등)</td></tr>
<tr><td rowspan="3">응용과학</td><td>공학(정보기술, 기계 등)</td></tr>
<tr><td>의약학(의·치·한의학 등)</td></tr>
<tr><td>농·생명·수산·해양(농생명 등)</td></tr>
<tr><td rowspan="3">인문사회</td><td>인문학(외국어와 문학 등)</td></tr>
<tr><td>사회과학(경영, 교육 등)</td></tr>
<tr><td>디자인·영상</td></tr>
<tr><td rowspan="2">융복합</td><td>과기기반 융복합</td></tr>
<tr><td>인사기반 융복합</td></tr>
<tr><td>글로벌인재양성형</td><td colspan="3">융합형 R&D 분야</td></tr>
<tr><td>특화전문인재양성형</td><td colspan="3">과학기술/인문사회/예술 전 분야</td></tr>
</table>

2. 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 BK21 플러스 사업의 사업기간

- ❍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말까지(7년간 추진)
  ※ 단, '15년도 중간평가를 통해 2016년 3월 이후 지원사업단(팀) 재선정
- ❍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함
  ※ 다만, 1차년도의 경우 2013년도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함
- ❍ 위 사업기간은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점검의 시기를 고려하여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함

▢ 협약기간의 소급, 단축 또는 연장

- ❍ 장관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협약기간을 사업연도와 다르게 소급해서 정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Ⅳ.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공고

1. 사업계획 수립/통보 및 승인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 장관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

▢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 전문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맞추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도 사업 개시일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2. 사업시행계획 공고

▢ 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내용 공고

❍ 장관은 승인 · 확정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

[공고 내용 포함 사항]

1. 연도별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 내용
2. 사업단(사업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연차점검·중간평가·종합평가 기준 및 절차와 일정
3. 신규 사업단 선정 계획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

Ⅴ. 사업 운영체계

1. 전문기관의 역할

▢ 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 위탁

❍ 장관은 BK21 플러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

전문기관의 권한과 책임

☞ **전문기관의 권한**

○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
○ 사업단 수시 점검, 선정평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등 각종 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별도의 사업관리 지침 및 기준 제·개정(훈령 및 교육부 지침 범위 내)

☞ **전문기관의 책임**

○ 전문기관의 장은 위 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실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 권한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사업관리 전담조직

▢ 전문기관의 업무전담 조직 구성·운영

❍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훈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음

❍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장관은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Ⅵ. 협약체결·변경·해지

1. 협약의 체결

❍ 전문기관의 장은 신규로 선정된 사업단(팀)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훈령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

※ 훈령 제13조 ③항에 의거 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

협약내용 포함 사항

○ 협약 사업기간 및 협약 당사자
○ 사업 계획 및 목표
○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협약은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훈령 제13조 ④항)

❍ 사업단은 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별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

2. 협약의 변경

❍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협약의 변경(훈령 제14조)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사업단이 협약내용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단 소속 대학의 장 명의로 된 변경 사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변경 승인 요청

※ 전문기간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

○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훈령 제14조 ④항에 따른 사유에 한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협약의 변경(훈령 제14조) ④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학사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해지

▢ 협약해지 해당사항

○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및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단(팀)과의 협약을 해지 할 수 있음

협약의 해지(훈령 제15조)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학 및 사업단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요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업단이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3.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사업단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중대하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사업단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단의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대학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 협약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 대학의 장은 협약 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함

○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승인받은 후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함

▢ 협약해지 후속조치

❍ 정산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집행 잔액/이자 반납

-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지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에게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와 지원받은 사업비(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반환을 명할 시 사업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신진 연구인력 및 행정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반납 받을 수 있음

❍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납 받은 사업비를 다른 사업단(팀)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 협약체결 관련내용 풀이▶

○ 협약행위의 특징은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가와 사업자간의 법률적이며, 제도적인 구속관계를 형성하는 것임. 이러한 구속관계는 이전단계인 신청, 평가 및 선정단계에서의 일방적 의사표시 및 행위와는 다른 양 당사자간의 협력과 신뢰에 근거 하여야 함

- "협약(協約)"이란 통상적으로 국가와 국가, 국가와 단체, 국가와 개인, 단체와 개인사이의 일에 대하여 협의하여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 이러한 협약은 "계약(契約)"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계약은 "복수의 당사자가 반대방향의 의사표시를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협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 이상의 합의에 따라 성립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협약과 계약은 동일시되지 않는다 할 수 있음

○ 협약의 범위는 사업에 대한 협약 및 계약행위, 사업비 지급행위, 협약변경 및 해약행위 등 협약의 주된 업무와 그 외 세부업무별 절차 및 특이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함

○ 협약체결 대상은 전문기관,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책임자(사업단장)의 3자간에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은 사업책임자(사업단장)가 이행해야 할 소정의 책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하며 협약은 협약 당사간의 법률적이며 제도적인 구속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의 협력과 신뢰에 기반을 두고 이행되어야 함

○ 단년도 협약은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며, 다년도협약은 협약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사업기간 또는 단계사업기간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Ⅶ. 사업비 집행 및 관리

1. 사업비의 충당

○ BK21 플러스 사업 선정 사업단(팀)의 사업비는 100% 정부출연금으로 충당함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비는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15년도 중간 평가를 통해 일부 기존 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재선정된 사업단에 대하여는 사업단 선정시 별도로 정한 협약기간 동안을 지원기간으로 할 수 있음

○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집행 기준은 훈령의 각각 [별표 3] 및 [별표 4]를 따름

사업비 지출 항목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인건비(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3. 국제화경비
4. 사업단 운영비
5. 교육과정 개발비
6. 실험실습지원 및 산학협력활동비
7. 간접비

○ 대학은 각 사업단별 사업비의 2% 범위에서 사업단(팀)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음

3. 사업단의 회계 및 계정

○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임

○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회계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함

○ 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4.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 대학의 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사업비 범위에서 해당 사업 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훈령의 범위에서 대학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할 수 있음

○ 위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도별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계획 등의 작성 기준을 별도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5. 사업비의 집행

○ 사업비는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거나 관리할 수 없음

○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는 사업단 또는 산학협력단의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 사업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6. 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 사업비는 매 회계연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 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이월한도를 정하거나, 이월 현황을 차기년도 국고 지원 시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예산의 효율적 진행과 관리를 위해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 배부 시 감액 조정할 수 있음.

7. 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해당 사업단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이자 발생 내역 등을 사업단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34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에 따른 연도별 사업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발생 내역 및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 기타 기술료 등의 과실은 관계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할 수 있음

8. 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알아두면 좋아요

[지출원인행위 무효]

○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지출원인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계정과목으로 예산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원인을 하는 경우
○ 계정과목에 예산이 계상되어있지 않음에도 지출원인을 하는 경우
○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않는 자가 행한 지출 원인 행위
○ 정관 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지출 원인행위
○ 기타 사업이나 기관에 상당한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기되는 지출 원인행위

※ 예산업무 매뉴얼 : 사업비(예산) 집행 및 관리 업무 세부내용

Ⅰ 사업비 집행 및 관리

1. 사업비 중앙관리

○ 산학협력단이 사업비 중앙관리

○ “BK21 플러스 사업 계정” 을 설치하여 별도 관리

※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과 또는 사업단의 장 및 내부 구성원 명의의 계좌 개설 후 사업단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대학 내 부설 연구소 등을 통해 관련 사업단의 사업비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위반하는 것임(협약해지 사유 해당)

2. 사업비 계정 및 통장관리

가. 사업비 계정 관리

○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

○ 사업비는 사업단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관리

나. 통장관리

○ 별도 통장 개설의무 없음(통합 관리 가능)

※ 단, 통합된 계좌금액이 구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수입이자 등 공동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안분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 사업연도 종료 전에는 사업비 관리통장 변경 불가

※ 단, 불가피한 외부요인으로 사업비 관리통장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단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

3. 회계 일반사항

가. 회계연도

○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 다만, 1차년도 사업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함.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활동경비는 당해년도에 지출

- 사업연도 말에는 당해년도 지출건 중 미처리되는 내역이 없는지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나. 지출방법

○ 연구비카드 사용

※ 연구비카드 : 연구비의 집행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이 금융기관(신한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연구자에게 제공한 법인신용카드

○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 및 관리
- 세금계산서 청구를 근거로 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
-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인정 가능한 거래증빙
-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 각종 세금계산서(발생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명기), 전자세금계산서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다. 지출관리

○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후 지출

※ 원인행위 : 지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업단(팀) 또는 산학협력단의 내부승인을 얻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행위(내부기안 등)

○ 산학협력단에서 사업단의 원인행위에 따른 계약체결 또는 지출행위 수행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에 의하여야 함

○ 예산의 집행시 원인행위와 지출행위가 당해 사업연도에 동시에 발생
- 단, 지출원인행위 및 그에 따른 거래행위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10일이내에 지출행위가 수반되었을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

○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준하여 관리·보존

4. 사업비의 수혜대상

○ 모든 사업비는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참여대학원생이 사용
※ 지출시점에 참여인력으로 포함되어야 함

5. 사업비의 부당사용 방지

○ 사업비집행신고센터 운영
- 사업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 구축 및 운영(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

○ 부당사용내용 발견시 조치
- 해당 대학에서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를 재단에 보고
- 재단에서는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 및 추가 조사 가능
- 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하여 관련자 사업 참여 배제, 형사 고발, 행·재정 조치 가능

Ⅱ 예산 편성 및 변경

1. 예산편성

가. 개요

○ 전체사업비를 기준으로 항목별 편성비율에 맞추어 예산 편성

○ 예산변경은 대학 내 자체 승인에 따라 가능. 단, 항목별 최소 및 최대 지원 비율 준수

※ 성과급 및 간접비 증액 불가

나. 예산편성기준

○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table>
<tr><th colspan="2" rowspan="2">항목</th><th colspan="3">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th><th rowspan="2">글로벌
인재양성사업</th><th rowspan="2">특화전문
인재양성사업</th><th rowspan="2">사업비 편성내용</th></tr>
<tr><th>기초과학/
응용과학</th><th>인문사회</th><th>사업팀</th></tr>
<tr><td colspan="2">대학원생
연구장학금</td><td>60%이상
※의·치·한의학
분야 50%이상</td><td>50%이상</td><td>50%이상</td><td>40%이상</td><td>50%이상</td><td>• 석.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
-석사과정 : 월 60만원 이상
-박사과정 : 월 100만원 이상</td></tr>
<tr><td rowspan="2">인건비</td><td>신진
연구인력
인건비</td><td colspan="5" rowspan="5">비율제한 없음</td><td>• 월 250만원 이상</td></tr>
<tr><td>산학협력
전담인력</td><td>• 주관대학 지급 기준에 따름</td></tr>
<tr><td colspan="2">교육과정
개발비</td><td></td></tr>
<tr><td colspan="2">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td><td></td></tr>
<tr><td colspan="2">국제화경비</td><td></td></tr>
<tr><td colspan="2">사업단운영비</td><td colspan="5">10% 이내 또는 3,000만원 이내</td><td>•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예산 편성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td></tr>
<tr><td colspan="2">간접비</td><td colspan="5">2%이내</td><td></td></tr>
</table>

○ 단,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특수대학의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특수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항 목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대학원생연구장학금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신진연구 인력지원비	제한 없음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실험실습 지원비			
국제화경비			
사업단운영비	25% 이내	15% 이내	25% 이내
간접비	2% 이내		

2. 예산변경

❍ 사업비 항목 내/항목 간의 예산 변경은 대학 내 자체 승인에 따라 처리하되, 항목별 최소 및 최대 지원 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단,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음

알아두면 좋아요

[비목별 이월 및 편성 기준]

○ 연간 총 사업비(당해연도 협약액+전년도 이월금+이자발생액) 중 **연구장학금, 사업단 운영비, 간접비 편성비율 준수**

○ 원칙적으로 이월금 편성시 **비목/세목간 금액 변경은 가능**(실제 사용 가능 항목에 편성하되, 아래 **제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연구비카드 시스템에 비목/세목간 이월금 변경 입력 가능. 단, **연구비 카드시스템 입력 완료 후 변경은 불가**

[이월금 편성 시 제한 기준]

▸ **연구장학금 이월액은 연구장학금으로만 편성** 가능하며,

▸ **사업단 운영비, 간접비**는 전년도 해당 비목 **전년도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이월반영 불가**(해당 잔액을 타 비목으로 변경은 가능)

▸ 사업단 운영비 중 **성과급**은 전년도 해당 세목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이월반영 불가** (해당 잔액을 타 비(세)목으로 변경은 가능)

○ ’16년도 협약금액 편성.변경.관리

- ’16년도 협약금액에 대한 예산 변경은 대학 내 승인 하에 가능
- 단, **이월금을 제외한 당해연도 협약 예산 편성 비율은 훈령 별표 3에 따른 예산 편성 기준(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예시) 이월금을 제외한 당해연도 협약액이 15억원인 경우, 당해연도 협약 예산만으로도 연구장학금 7.5억원(미래기반 과기 사업단 9억원, 글로벌인재양성형 6억원) 이상, 사업단운영비 1.5억원 이내, 간접비는 3천만원 이내여야 함

[설명] 총사업비, 당해연도 협약액 대비 편성비율 관련

연간 총 사업비(T) = 당해연도(’16년) 협약액(A) + 전년도(’15년) 이월액(B) + 당해연도(’16년) 발생이자(C)

▸ **이월금 편성 시**

- 연간 총사업비(T) 대비 항목별 편성 비율을 준수하여 연구비카드시스템에 이월금(B) 입력을 통해 이월금 활용계획 확정

▸ **당해연도 협약금액(연구비카드시스템 수정예산 관리) 변경·관리**

- **당해연도 협약액(A) 대비 항목별 편성비율도 별도로 준수**하여야 함

(예시1) 당해연도 협약액 10억원, 전년도 이월액 총액 1억원, 전년도 이월액 중 사업단 운영비 잔액이 2천만원인 경우

→ 사업단 운영비는 총 사업비(T)의 10%인 1.1억원 이하로 편성 가능
당해연도 협약액(A) 중 사업단운영비(이월금 제외)는 10억원의 10%인 1억원을 초과하여 편성 불가

(예시2) 당해연도 협약액 10억원, 전년도 이월액 총액 1억원, 전년도 이월액 중 사업단 운영비 잔액이 “0”인 경우

→ 총 사업비(T)의 10%는 1.1억원이나, 사업단운영비 전년도 잔액이 “0”이므로 사업단운영비에 이월금 반영 불가
당해연도 협약액(A) 중 사업단운영비(이월금 제외)는 10억원의 10%인 1억원을 초과하여 편성 불가

BK21 플러스 사업 전년도 집행잔액 이월 및 편성 기준

비목명	당해연도 협약액 관리	이월금 관리	총 사업비대비 편성비율(이자 포함)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당해연도 협약액 대비 40~60%(유형별·분야별 기준) 이상** 유지	▸ **전년도 연구장학금 잔액 → 연구장학금으로만 이월 반영** ▸ 석-박사간 변경 가능	▸ **연간 총 사업비(협약액+이월금+이자)의 40~60%(유형별·분야별 기준) 이상**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	▸ 별도 기준 없음 (비목간/세목간 변경 가능)	▸ 별도 기준 없음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			
교육과정 개발비			
실험실습및산학협력활동지원비			
국제화경비			
사업단 운영비	▸ **당해연도 협약액의 10% 또는 3천만원 이내** 유지 ▸ **성과급 증액 불가**	▸ 전년도 사업단 운영비 **잔액을 초과하여 이월반영 불가** ※사업단 운영비 잔액을 타 비목으로 이월 가능하나, **타 비목 잔액을 사업단운영비로 이월 불가** ▸ 세목간 조정은 가능하나,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급 잔액을 초과하여 이월 반영 불가** ※성과급 잔액을 타 세목으로 이월 반영은 가능(**타 비·세목 잔액을 성과급으로 이월반영 불가**)	▸ **연간 총 사업비(협약액+이월금+이자)의 10% 또는 3천만원 이내**
간접비	▸ **당해연도 협약액의 2% 이내** ▸ 간접비 증액 불가	▸ **전년도 간접비 잔액을 초과하여 이월반영 불가** ※타 비목 잔액을 간접비로 이월 불가	▸ **연간 총 사업비(협약액+이월금+이자)의 2% 이내**

3.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 매 사업연도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사업비 범위에서 구체적인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Ⅲ 항목별 집행방법

1. 항목별 집행 기준

구 분		집행 기준	비 고
1.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석사과정생 월 60만원 이상 • 박사과정생 월 100만원 이상	-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대학 및 사업단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2. 인건비	신진연구 인력	• 월 250만원 이상	-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퇴직금 및 고용보험 등 법정 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한 액수임 - 리서치펠로우에 대한 인건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집행 가능(최소기준 미적용)
	산학협력 전담인력	• 주관대학 지급기준에 따름	- 전임교원 인건비로는 지급 불가
3. 교육과정 개발비		• 교재개발비 • 사례조사비 및 실험비 등	- 교육과정 개발 관련제반 경비를 편성·집행
4.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 소모성 재료비 등 • 창업,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 경비	- 기자재 및 장비 구매비 집행 불가
5. 국제화경비		• 국제학술회의 참가비용 •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장·단기 해외 연수 경비 • 해외학자 초빙 • 해외특허 출원(등록) 관련 비용 등	- 참석 여부 및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기 해외연수 지양 - 해외학자 초빙·활용경비는 주관대학의 전문가 활용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체재비 및 항공료 등 지원(다만, 사업단의 사업 신청서에 따른 연차별 예산 운영계획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 기관과 온라인 강의 및 수강에 대한 관리주체 및 체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집행 가능)
6.사업단운영비	• 인건비	- BK21플러스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단 소속직원 인건비	- 퇴직금 포함
	• 성과급	-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하여 지급) -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정기적 지급 등)
	• 국내 여비	- 사업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	- 해당 대학 여비규정 준용(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해외 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국외 여비 등은 국제협력 경비에서 집행
	• 학술 활동 지원비	- 논문 게재료 - 국내 학회, 세미나 참가비 - 전문가 초청 자문료·원고료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 국내·외 정보 수집비 등	-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제한 - 참여 교수에 대한 정책 연구비, 교재 개발비,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제한
	• 산업 재산권 출원 등록비	- 국내 특허 출원.등록비	
	•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
	• 회의 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식대 등	- 사업참여교수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 -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
	• 기타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단에서 적정한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8. 간접비		•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 간접비의 편성 비율은 연간 사업비 총액의 2%를 넘을 수 없음

2.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수혜대상 : 지원대학원생

-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으로 사업단(팀)에서 선발된 자
- 과학기술분야(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의 과학기술분야 및 과학기술기반 융복합 사업단, 글로벌인재양성형 사업단, 특화전문인재양성형 과학기술분야 사업단)의 경우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에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지원
- 인문사회분야(인문학, 사회과학 분야 등) 사업단(팀) 및 과학기술분야 사업팀의 경우 해당 사업단(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지원

※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

○ 연구장학금 : 석사과정생 월 60만원 이상, 박사과정생 월 100만원 이상 지급(입학한지 2년 이내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월 60만원, 6년 이내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월 100만원 이상 지급)

※ 석·박사 통합과정생에 대한 학칙 상 별도의 구분 기준이 있는 경우, 입학한지 6년 이내의 석·박사 통합과정생에 대하여 그 기준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구분 및 지원 가능

- 최소 한 학기 지원(예외 : 대학원생의 휴학·자퇴·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

※ 휴학, 자퇴, 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인 경우 일할계산 지급

- 외국인 학생 지원 가능(연구과제에의 참여, 학술문헌 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 기준은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따름
-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등을 판단하여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가능. 단, 최소 기준 준용(석사 : 60만원, 박사 : 100만원)
-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음(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학생별 개인계좌 입금,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급**
- 원천징수 불필요

※ BK21 플러스 사업 연구장학금은 지원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까지 포함하여 국가재정 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대학원생 장학금을 제외한 다른 비목에서 인센티브 편성 및 지급 불가)

※ 지원대학원생 중 일부 인원이 사업단(팀)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추가로 지원대학원생 선발 가능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금지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BK21 플러스 사업 참여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함

- 사업단장 및 참여교수는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 운영·관리 지침 [별표 5]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단(팀)에 보관하여야 함

※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조치 기준**(제2기 4차 사업총괄위 심의·의결('15.7.))

구분	조치기준
공통기준	- **공동 관리로 확인된 연구장학금 대상금액 전액 환수** (단, 제보자 등 피해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피해 학생에 피해금액을 지급하도록 조치 가능) - **사안이 중대·명백하여 협약을 해지할 경우 : 공동 관리된 연구장학금 환수 외에 사업비 잔액 환수,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 총괄위원회 심의 후 당해 기 집행 사업비도 환수 가능**
협약해지/ 계속지원, 참여제한* 등 *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제재	① **사업단(팀)장** 연구실에서 발생된 경우 - 사업단 협약해지 - 해당 사업단(팀)장 참여제한 조치 ② **참여교수 1인**의 연구실에서 발생된 경우 - 관련 교수 사업단(팀) 배제, 참여제한 조치 및 사업단(팀) 사업비 삭감(10%)* * 조치시점의 해당년도부터 매년 사업비 10% 삭감 ③ **참여교수 2명 이상**의 연구실에서 발생하거나, 동일 사업단(팀)에서 연구장학금 부적정 관리 재발 시 - 사업단(팀) 협약해지 및 관련 교수 참여제한 조치

○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 인정**

- 다만, BK21 플러스 사업과 이중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 불가

○ 행정조치 및 구비서류

-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전일제 대학원생 자격여부 확인내역 (4월 1일, 10월 1일 기준의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증빙 : 4대보험가입확인서)

※ 기준일자의 4대보험 미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증빙

-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선발내역

알아두면 좋아요

[과학기술분야 사업단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비율(70% 이내) 관리]

○ 비율 산정 모수는 해당학기내 참여대학원생 총 수임

○ 연구장학금은 참여교수의 전체 참여대학원생 중 70% 이내로 지원되도록 하여야 함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 월지급 상한선 관리]

○ 대학원생 월 지급 상한선은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받는 금액 및 BK21 플러스 사업에서 지급받는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 이내임

※ 단, 성과급의 경우 '16년 9월에 1학기 성과에 대해 성과급을 60만원 받았다 하더라도 월 지급 상한선 초과 여부 관리는 기여도 평가대상 기간인 3, 4, 5, 6, 7, 8월에 각각 10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 자체 운영규정에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을 명시한 경우 집행 가능함

[참여대학원생 요건]

○ 참여대학원생 요건은 4대 보험 가입 여부로 판별함

○ 허용 학점 내 시간강의 및 동 사업 지침 제11조 ②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사업단장의 소명 선행 필수)를 제외한 4대보험 가입자는 참여대학원생 요건에 충족되지 않음

[연구생(수료생) 등록]

○ 수료 후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참여대학원생이 될 수 없음. 대학 시스템에 등록되는 것을 권장하며, 공식적인 문서로 증빙이 가능해야 함

○ 수료 후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는 기간도 참여대학원생 입학 후 연한 산정에 포함됨

[체계적 학생관리 및 참여인원 등록 요령]

○ 학기 초에 참여대학원생 적격 여부를 확인(증빙 확보)하고 지원 비율을 고려하여 지원 대학원생 선발

○ 학기 말 최종 연구장학금 지급전(2월, 8월) 참여대학원생 적격 여부 재점검 권장

○ **참여대학원생 정보는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매 학기 종료 후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상태 확인 및 수정

[참여대학원생 지도교수 변경]

○ 지도교수 변경은 가능함. 다만, 새로운 지도교수가 학과내 참여교수가 아닌 경우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함에 유의

[학기 중 대학원생 변동(휴학, 취업 등)]

○ 학기 중 대학원생이 취업, 휴학 등으로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 졸업의 경우는 사업단장이 해당 월에 사업에 전념했다는 점을 확인하면 그 달 말까지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부당집행 유형

○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 단가 미만 지급

○ 부적격대학원생에 대한 참여대학원생 등록 및 연구장학금 지급

- 직장인 가입자 : 직장인 가입자는 비전일제 대학원생으로 분류됨
- 4대보험 가입자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자는 비전일제 대학원생으로 분류됨
- 명의대여자 : 자격증 등의 명의대여 자체가 불법이므로 참여 불가능
- 연한초과자 : 석사과정생은 입학 후 2년 이내, 박사과정생은 입학 후 4년 이내,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입학 후 6년 이내만 참여 가능
- 연구생등록 미등록자 : 연한초과자가 아닌 학위과정 수료자는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가짐
- 휴학생 및 자퇴생 : 휴학생, 자퇴생에 대한 참여대학원생 선발 및 연구장학금 지원 불가능
- 시간강의 시수(학기당 6학점 이내)를 초과한 대학원생 : 시간강의 경력증명서 등 강의시수 확인 필수

○ 취업시점 이후기간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월 연구장학금 일할계산
- 자격증 대여, 위장취업, 사업장 등록자 등의 경우에도 비전일제 대학원생으로 판단

○ 장기해외연수생 장학금 지급

- 3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해외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

○ 4대 보험 증빙자료 미비

○ 장학금 공동관리 등

- 연구장학금을 지급 후 회수하여 미참여대학원생 지원,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활용
- 대학원생 개인통장을 타인(연구책임자 등)이 통합관리 하는 경우

부당집행 사례1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장학금 지급

- BK21플러스사업 참여교수가 아닌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에게 연구장학금 지급(사업단 학과 소속 교수이지만 동 사업 비참여교수)
- 학기도중 지도교수를 변경한(비참여교수→참여교수) ○○○학생에게 지도교수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분 장학금을 전액 지급함

부당집행 사례2 연한초과자 장학금 지급

- ○○대학교 ○○사업단은 박사과정 9학기차인 ○○○(수료상태이나 졸업 이전인 학생임)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하여 한 학기 장학금을 지급함
- ○○○ 수료학생의 연한 기산 시 수료 이후 연구생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지 않아 참여대학원생 적격자로 착각하여 오지급함

부당집행 사례3 4대보험 가입자에게 장학금 지급

- ○○대학교 ○○사업단은 학기 도중 취업한 학생 ○○에게 취업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학기분 장학금을 전액 지급함
- ○○대학교 ○○사업단은 사업자등록신고를 한 ○○에게 등록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계속 지급함

부당집행 사례4 참여대학원생 자격 증빙자료 불비

- 참여대학원생임을 증빙하는 학적부(지도교수, 등록학기 증빙), 4대보험 가입확인서 불비
- 외국인학생의 경우 4대보험가입확인서 대신 D-2비자로 대체가능하나, D-2비자가 아닌 타비자 구비
- 증빙서류 출력 일자가 사업 참여기간이 아님

부당집행 사례5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원생 인건비 상한선 초과

- 타 국가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본 사업의 연구장학금을 합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대학원생 인건비 상한액(석사 월 180만원/박사 월 250만원) 초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원생 인건비 지급 관리대장 불비

<대학원생 인건비 상한액>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

부당집행 사례6 BK21플러스사업과 이중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

- BK21플러스사업 장학금과 이중지급을 제한하는 사업(ex.글로벌박사 양성사업, 국가연구장학금 등)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에게 BK21플러스사업 연구장학금을 지급
- 해당 사업 및 장학금 담당 기관에 BK21플러스 연구장학금과 이중지급 제한 여부 확인 필요

(예시)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FAQ

Q. BK21플러스장학금이란 무엇이고,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와 중복 수혜 가능한가요?

A) BK21플러스장학금과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함으로 장학생 본인이 두 장학금 중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금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등록금 - 400만원)에 한하여 타 장학금 및 대출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방책

- 매 학기 시작 후(4월 1일, 10월 1일 기준) 참여대학원생 확정시 참여대학원생 리스트를 만들고 참여대학생별 학적부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구비하여 해당 인원의 적격여부 일괄확인(대학 내 학생관리부처와의 협조가 있다면 수월한 확인 가능)

- 매 학기 시작 후 참여대학원생에게 학기도중 취업 또는 자퇴 등 변동사항이 생기는 경우, 해당사항을 사업단에 보고할 수 있도록 "참여대학원생 서약서" 등을 통해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 안내 필요
- 학기 마지막달(2월, 8월) 4대보험 가입여부를 재조사하여 학기 내 지급 적절성 확인
- 4대보험 가입확인서류는 학기 초에 수령한 이후 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산학협력단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업단과의 원활한 정보전달이 필수적임
  - 일부 사업단은 학생의 증빙서류 제출지연으로 현장점검 시점 직전 확인 시 직장가입자로 확인되어 관련 금액을 환수한 사례가 있음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인원의 경우 다른 증빙으로 대체 구비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의 비자 Type(유학비자:D2) 제시할 수 있으나 기간이 유효해야 인정
- 사업단 참여교수를 변경 또는 증원하는 경우, 해당 교수의 지도학생 또한 동 사업 참여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 사업단 참여교수가 참여제한자가 되는 경우 제재시작일로부터 해당 참여교수의 지도 학생도 참여자격이 상실됨에 유의

■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 변경 시 변경되는 지도교수의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학생의 동 사업 참여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 참여대학원생이 시간강의를 하는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자체적으로 확인 후 사업단장의 승인 취득 필요

※ 최근 시간강의자의 복리증대를 위하여 4대보험 중 일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의 시간강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비로 전일제 대학원생임을 증명할 수 있음

■ '14.12월 개정된 사업 관리운영 지침 제11조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참여가 허용되는 아래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확인서 구비 필요

-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휴직을 한 사람
-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사람

■ 대학에 따라 신입생 입학 후 일정 학기가 지나야 지도교수가 정식 배정되는 사례가 있음

- 이 경우에도 해당 신입생들의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학적부 등 공식 서류상으로 지도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해당 증빙이 확인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불가

3.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수혜대상 : 신진연구인력

- 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 리서치펠로우로 채용된 자
-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기준 등을 준용하여 채용

○ 인건비 : 월 250만원 이상 지급(단, 리서치 펠로우에 대해서는 본 지급단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월 지급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여 실제 퇴직시 지급 가능

※ 신진연구인력의 월 지급 기준액(250만원)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월 급여액은 월 230.8만원 이상이면 가능

※ 1년미만시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위해 유보했던 금액을 인센티브의 명목으로 지급 가능

-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250만원 이상 지급(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인건비 최소단가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추가하여 계상해야 함)
- 4대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 기관부담금을 신진연구인력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성과급

-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신진연구인력 인건비에서 지원
- 신진연구인력 근로계약서 및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성과급 지급 관련 사항이 명시된 경우 집행 가능

❍ 구비서류

-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 개인별 급여지급대장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내역(인원, 퇴직급여 계산액)

알아두면 좋아요

[신진연구인력 자/타교 비율 관리]

○ 박사후연구원은 박사기준, 계약교수는 학사/박사 기준으로 각각 자교 출신 비율 2/3 이내를 유지해야 함. 각 3인 이내의 경우 미적용

○ 채용시에 반드시 해당 인력의 이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여 자/타교 여부 점검

○ 자교 출신이더라도 전공이 상이할 경우에는 자교로 적용하지 않고 타교로 인정 가능함

○ 자/타교 비율은 상시 유지되어야 함이 원칙임. 타교출신 참여종료 등으로 인해 자/타교 비율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시 반드시 타교 출신을 채용해야 함

[신진연구인력의 타 과제 참여시 인건비 지급 등 처리 방법]

○ 사업책임자가 해당 신진인력에 대하여 BK21플러스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는 경우 타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타 과제 인건비 수령 가능여부는 타 과제 사업담당자에게 확인 필요. 단, BK21플러스 사업에서 250만원 이상 지원받아야 함

○ 리서치펠로우에 선정되는 경우 지급 단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단, 본 사업의 사업비로 월 250만원 이상 지원받는 경우만 성과 인정

[신진연구인력 강의 학점 관리]

○ 박사후과정생은 학기당 교내외 6학점, 계약교수는 학기당 교외 6학점 이내 가능

○ 계약교수의 교내강의는 교수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 별도의 제한은 없음. 다만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강의 시수 및 강의료 지급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별도 명시할 것을 권장함

[신진연구인력 퇴직금 처리]

○ 신진연구인력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 적립금은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할 수 있음(기여도 증빙 필요)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사업비에 환입하여 사용 가능함(연차가 지난 경우 반납 가능)

○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인센티브 지급여부, 환입여부는 대학과 사업단이 협의하여 결정하기 바람

부당집행 유형

○ 신진연구인력 채용 관련 증빙 미비
- 임명과 관련한 계약서 및 발령공문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계약서상의 하자
- 근로조건, 의무와 책임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관련 법규에 부합하도록 작성되고 관리되어야 함

○ 4대보험료 과다계상
- 4대보험료 산정시 실제 청구된 보험료가 아닌 자체적으로 정한 비율을 사용하여 실제보다 과다계상 불가

○ 근로계약 종료 후 인센티브 지급
- 신진연구인력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 중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을 사유로 인센티브 사후지급 불가

○ 신진연구인력의 비전일제 근무
- 소속 사업단(팀) 내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대표이사 겸임 등의 비전일제 인정 불가

○ 신진연구인력의 시간강의 학기당 6학점 초과
- 박사후과정생은 학기당 학내·외 6학점 이내, 계약교수는 학기당 교외 6학점 이내 시간강의 허용

○ 부적격자에 대한 신진연구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급
-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요하고 있으므로 박사학위 취득시점에 바로 계약교수로 채용 불가

○ 최소 지급 기준 미준수
- 최소 인건비 지급 기준인 월 250만원 미만의 급여를 책정한 경우
- 퇴직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 외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까지 포함하여 250만원을 지급한 경우

부당집행 사례1 **박사학위 취득 전 고용하여 인건비 지급**

- 2014년 3월 박사학위취득 예정자를 박사학위 취득시점 이전인 2014년 1월부터 고용하여 1월, 2월 인건비 지급
- 박사학위 취득 예정서를 증빙서류로 구비

예방책

■ 신진연구인력 채용계약서를 관련 서류와 비교하여 계약의 적정성 검토

관련서류	확인사항	확인사항
채용계약서	계약기간	
학위증명서	박사학위 취득시점	박사학위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인지?
임용공문	발령시점	발령시점이 계약기간과 동일한지?

부당집행 사례2 **미자격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 ○○대학교 ○○사업단은 사업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을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하고 수개월간 인건비를 지급함
-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경력을 요하고 있으나 ○○대학교 ○○사업단은 박사학위자의 학위 취득시점에서 바로 해당인원을 계약교수로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

부당집행 사례3 **4대보험료 집행재원 부적절**

- ○○대학교 ○○사업단은 대응자금에서 신진인력○○○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관련 4대보험료는 국고지원금에서 지출 처리함
(사업단 내 신진연구인력의 급여재원이 변경되었으나, 4대보험 재원은 조정하지 못함)

부당집행 사례4 **4대보험료 과다계상**

- ○○대학교 ○○사업단은 신진인력○○○에 대한 4대보험료 산정시 실제 청구된 보험료가 아닌 자체적으로 정한 비율을 사용하여 실제보다 과다 계상한 후 4대보험료 출금계좌로 송금함

예방책

■ 신진인력 인건비의 재원을 가급적 일원화하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관리(지적된 경우는 사업연도가 변경되면서 당해연도 관련 인건비 재원 부족으로 대응자금을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국고에서 일괄 처리로 발생한 사례임)
■ 4대보험 지출결의시 공단 청구서에 의하여 정확하게 집행액 산정

부당집행 사례5	인센티브 규정 초과

- ○○대학교는 신진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상한선을 ○○로 두고 있으나 해당 대학 ○○사업단에서는 신진연구인력 ○○에게 상한선보다 ○백만원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였음

예방책

- ▪ 인센티브 지급 결정을 위한 회의시 관련한 대학 자체규정 등 제한사항을 함께 자료에 명시하여 적정한 금액을 정하도록 함
  - 특히, 인센티브 등 개별적인 평가를 통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그 근거를 확인하고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4.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 수혜대상 :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채용된 자(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전임교원 채용 불가)

○ 인건비 : 채용 인력의 전문성, 대학 자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책정

○ 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월 지급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여 실제 퇴직시 지급 가능
-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급여 지급
- 4대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 기관부담금을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
- 개인별 급여지급대장
-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내역(인원, 퇴직급여 계산액)

5. 교육과정 개발비

○ 사업단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목적

-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비, 교재 개발비, 사례조사비, 외부전문가 활용비 등을 집행 가능
-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비 또는 용역비 등으로 집행 가능

· 사업단 참여교수 및 해당학과 교수는 누구나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과제 연구에 참여 가능
· 연구과제 형태로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을 할 경우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과정개발 연구 및 용역과제 인정 항목을 참고하여 과제별 사업비 예산을 수립한 후, 과제 수행
· 내부(사업단 소속 학과) 구성원에 대한 수당 성격의 경비 지급은 제한되지만 원고료 지급은 가능
· 외부 민간업체와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대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음

※ 용역기간은 사업 연차를 걸쳐 시행할 수 없으며, 연차 종료 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사업비 정산에 포함

※ 교육과정 개발 용역과제 인정 항목

항목	집행 가능 내역
인건비	❍ 과제에 참여하는 박사급연구원, 전임연구인력수당,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수당 ❍ 인건비 지급방법 : 참여연구인력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계좌이체를 하여야 함. (세금 공제 후 집행)
조사 연구비	❍ 사례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기타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연구비 등
전산 처리. 관리비	❍ 당해과제 수행에 관련되는 프로그램 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등 - 정보D/B사용료,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 전용회선 사용료는 공공요금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처리(인터넷 포함) -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
여비	❍ 과제참여교수 및 연구보조원의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 (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국외여비 집행 불가) - 여비는 출장 명령 후에 규정에 따라 지급 함. 출장명령서에 의한 출장 등 대학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 출장여비의 경우 별도의 증빙영수증을 구비할 필요가 없음.(단, 항공료는 제외) ※ 해당 대학 여비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관련서류 첨부.
수용비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우편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송금수수료 -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기술 정보 활동비	❍ 사례개발, 교과목개발, 교수법개발 등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아래의 경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해당 과제관련 도서만 인정) - 외국전문가 초청경비, 국내.외 자문료 ※ 전문가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 기재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원고료 - 회의수당, 강사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사업단 소속 학과 구성원에게는 지급 불가) ※ 해당자에게 원천 징수 후 금액을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 - 회의비 지출시 회의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구비

알아두면 좋아요

[교육과정 개발비 집행 방법]

○ 교육과정 개발비 집행은 예산집행 기준에 명시된 항목으로 집행되어야 함
○ 정책과제나 용역 형태로 별도 수행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교내 과제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별도 과제로 수행 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별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 과제비는 BK21플러스 사업비에서 전액 집행된 것으로 처리하고 추후 정산. 잔액은 당해연도 사업비에 환입 가능
○ 교육과정 개발비 집행 시 반드시 결과물을 제시해야 함
(예시 : 교육과정 개발 결과물, 과제수행 결과 보고서 등)

6.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 사업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등으로 집행 가능
※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집행 불가
※ 해외에서의 재료비 등 집행 불가

❍ 또한 산학협력과 관련된 창업 및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비 등 관련 경비로도 집행 가능

부당집행 사례1 **연구기자재 등 구입**

- ○○대학교 ○○사업단은 사업단 연구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로 국고에서 스피커, 앰프 등을 구입

부당집행 사례2 **장비 부품 및 범용성 프로그램 구입**

-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컴퓨터 부품 구입(특히 컴퓨터 및 그 부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용성 장비로 구분되어 일반 연구개발사업에서의 구입도 제한됨)

부당집행 사례3 **범용성 프로그램 구입**

- ○○대학교 ○○사업단은 실험실습지원비를 활용하여 범용성 소프트웨어 5 copy를 구입함. 해당 사업단에서는 본 소프트웨어가 학생들의 실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나 소프트웨어 구입 목적이 BK21플러스 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없고 해당 소프트웨어 성격이 범용성 성격으로 파악되어 환수

예방책

- 연구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경우 대학 등을 통하여 관련 기자재를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관련된 연구의 연구비 계정 등을 활용하여 집행
- 재료비 지출시 사전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재료를 구입

7. 국제화경비

○ 수혜대상 :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참여대학원생

※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 집행 불가

○ 해외학회 참가, 대학원생 해외 인턴쉽, 해외학자 초빙, 해외 장·단기 연수 경비,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로 사용 가능

○ 신진연구인력 단독 해외 연수 가능. 단, 30일 초과 장기해외연수 집행 불가

○ 지원대학원생의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

○ 지원기간

- 해외학회, 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여행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의 해외 체류에 대한 여비 지급 불가
- 개인사유로 인해 참여대학원생이 동반되지 않은 기간 동안의 해외 체류에 대한 여비 지급 불가

○ 여권 발급 수수료 등 인정 불가

○ 여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대학 여비 기준(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되, <u>대학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산학협력단 또는 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 불가</u>

○ 국제화 경비 집행 관련 구비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 항공료지급영수증(Invoice, 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 출장결과보고서

가. 단기해외연수 : 여비, 체재비,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국제학회 참여 및 국제전시회 출품활동(디자인·영상분야에 한함),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 연수 지원

○ 국제학술대회

- 국제학회 참가경비 :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학회 참가시 지원(15일 이내)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4개국 이상 참여

○ 총 구두발표논문 20건 이상(인문사회분야의 경우 발표논문 수가 10건 이상)

○ 총 구두발표논문 발표자 중 외국인(소속기관 기준) 논문비율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디자인영상분야의 경우 국제 전시회 출품활동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단순 참가의 경우 총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에 한해서 지원

※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집행항목

· 항공료 :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에 따라 지급

·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 연구비카드 사용 원칙(단,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

· 여비 :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 해외기간으로의 단기 연수(15일 이내)는 MOU 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 가능, 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국제학술대회 기준을 미충족하는 학술대회 참석 경비나 워크숍, 세미나 등의 단순 행사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해당 대학 여비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항공료 및 여비, 수업료, 시설이용료 집행 가능
- 대학 자체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외에 일자별/인원별(참여교수 동반 시 해당 교수 포함) 상세 계획 및 활동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연수결과보고서 등 구비 필요
- 예산운영계획서에 기재된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연 1회에 한하여 허용

FAQ

Q : 단기연수를 가려는 경우 해당 사업단 소속 학과와 대상 기관 사이에 MOU를 체결해야 하나요?

A : 대상 대학 또는 연구·교육기관과 사업단 소속 대학 간 인적교류에 대한 MOU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 학과에서 중복하여 별도의 MOU를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 단기연수 대상 기관과의 MOU 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단기연수가 불가능한가요?

A : 대상기관의 공식 초청장이 있을 경우 초청장을 근거로 단기연수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 장기해외연수 : 항공료, 교육훈련비, 해외인턴쉽활동경비

○ 연수기간이 15일 초과인 경우 국외체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 집행항목

- 항공료 :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 : 수업료, 숙박비(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
- 해외인턴쉽활동경비 :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에 따른 국외 체재비

○ 지원대학원생의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 지급 불가

○ 장기해외연수시 동반 교수 관련 경비 집행 불가

다. 해외학자 초빙 : 여비(항공료 포함), 체재비, 강사료

○ 여비 및 체재비 : 대학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

○ 강사료 : 대학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대학 자체규정 없을 시 규정 마련 후 집행)

○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 가능

○ 출장비 산정 기준 초과 금액,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과비용 등은 사업비에서 사용 불가

○ 적용환율 : 해당대학 여비규정상 전환 환율 적용

○ 구비서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여권사본)
- 항공료 지급 영수증
- 출장결과보고서

라. 기타 국제화경비 : 회의장대여료, 행사개최비, 회의비, 다과비, 인쇄비 등

○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경비 지원(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국외출장비 및 체재비 : 대학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부당집행 유형

○ 국제협력경비 여비 과다 지급
- 출장일수 초과계상, 등급지 변경, 장기연수시 출장비기준 산정 등의 방법으로 여비 과다 지급

○ 학회등록비에 만찬비용, 식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비 지급

○ 해외우수학자 초빙 경비 자체규정 없이 지급

○ 참여교수 단독의 해외 연수비용 집행

○ 부적격자에게 국제협력경비 지원
- 취업으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학생에게 출장비 지원 불가
- 1학기 동안의 참여대학원생에게 참여하지 않은 2학기에 개최된 국제학회 등록비 및 출장비 지원 불가. 사업비 집행시점과 학술대회 개최시점 모두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집행 가능

○ 국제학회 참석 후 증빙자료 미흡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 해외기관과 MOU 체결, 해외 우수학생 모집 등을 위한 해외 출장

부당집행 사례1 **참여대학원생 미자격자 경비 지원**

- 1학기 기간 동안만 참여대학원생이었던 ○○○에게 2학기에 있었던 국제학회 등록비 및 관련 출장비를 지원함
- 참여대학원생중 취업(4대보험가입)으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에게 국제협력경비를 지원
- 비참여교수(사업단 학과 소속 교수이나 동 사업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에게 국제화 경비 지원

부당집행 사례2 **참여교수 단독 국제학회 참석 및 지원**

- ○○대학교 ○○사업단은 참여교수가 단독으로 논문발표를 목적으로 국제학회에 참석하여 학회등록비 및 관련 출장비를 지원받음
- ○○대학교 ○○사업단 참여교수가 비참여대학원생과 함께 국제학회에 참석하여 참여교수는 BK21 플러스 사업비에서, 대학원생은 타 연구비에서 관련 경비를 지원받음

예방책

■ 국제학회 참가 신청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갖추었으나 졸업, 취업 등의 사유로 학회 참가 시점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관련 경비가 국고지원금에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사업 차년도간에 걸쳐진 학술대회, 다음 차년도 기간에 개최되는 학술대회 관련 항공료 및 학회 사전등록 경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여 집행 필요(체재비는 사전집행 가능 대상 아님)

■ 참여교수는 지도학생이 본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학술대회에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인솔자로서만 참여 가능함에 유의

알아두면 좋아요

[단기연수 지원시 절차 및 유의사항]

○ 지침 및 예산편성기준에 제시하는 요건에 만족하는 국제학술대회 참석, 해외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식 교육프로그램 참석, 해외학자와의 공동연구수행의 경우 단기 연수 지원이 가능함.

○ 단기연수 지원 전 국외출장계획 승인(원인행위)후 항공권 예약 등을 진행

○ 비자문제로 해당국가 여행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및 조치

○ 국제학술대회 요건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학술대회인지 사전 조사(과거 개최 정보를 확인)

○ 교육프로그램 참석, 공동 연구수행의 경우 MOU가 체결되어있거나 해당 기관 책임자로부터 사전에 공식 초청(승인)을 받아야함(승인 Letter 등)

○ 연수종료 즉시 연수목적, 내용, 시사점, 향후연구에 적용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해외 개최 국제학술 대회 지원 경비 집행 방법]

○ 국제학술대회 개최의 경우 국제학회 요건에 만족하여야함

○ 행사 개최 전 사전계획에 소요 경비 명세를 명확히 제시하여 내부 결재를 득해야 함 (국내 개최도 동일함)

○ 행사의 일환으로 집행되는 비용은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국제화 경비로 처리 가능함

[국제학술대회 등록비 지원 방법]

○ 국제학술대회 등록비는 연구비카드로 결재하는 것을 권장하며, 직접 송금도 가능함

○ 해외 집행의 경우 일반 집행보다 높은 투명성을 유지해야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결재를 득하고 여비와 함께 지원 가능함. 공식적인 영수증 등 증빙자료 관리에 유의해야 함

[사업 연차를 걸치는 연수경비지원]

○ 해외연수기간이 연차를 걸치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비에서 모두 지원 가능함. 사전에 이에 대한 결재를 받아야 하며 차년도에 참여대학원생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 (예시) 연수기간이'15년 2월 27일 ~ 3월 3일 인 경우 2차년도 사업비로 3월3일까지의 비용 지급 가능. 단, `15년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3일간의 비용 환수

8. 사업단 운영비(사업비의 10% 이내 또는 3,000만원 이내)

가. 인건비(사업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

❍ 인건비는 사업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집행 가능

❍ 사업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의 퇴직금 및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집행 가능

나. 성과급(참여교수)

❍ 우수 연구성과, 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 집행 가능

- 성과급 지급 기준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
- 1인당 연 300만원 범위 내 지원(1차년도 150만원 이내)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정기적·고정적 지급 등) 불가
- 신진연구인력 및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인건비 및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지급

알아두면 좋아요

[성과급 지급 방법 및 절차]

○ 성과급은 반드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산출된 기여율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

○ 기여율 계산 방법은 상세하게 정의해야하며, 정량적 연구실적에 치중하기 보다는 연구실적, 교육실적(강의, 대학원생 배출 및 취업 실적 등), 사업단 운영에 관한 기여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적절히 배분할 것을 권장함

○ 특히, SCI논문 한편 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기여도 평가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실적 산정에 포함 권장

○ 성과급 금액은 개인 당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급여 성격의 성과급(정기적 지급, 고정적 지급 등)은 환수대상임. 학기 또는 연단위로 기여도 평가를 수행하여 지급해야함.

다. 국내여비

❍ 대학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라. 학술활동지원비

❍ 논문게재료,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일회성), 전문가 초청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수집비

-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등은 대학 자체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 사업단(팀) 소속학과 구성원에 대한 번역료, 자문료, 원고료 등은 지급할 수 없음. 학부제 운영대학의 경우 동일 학부 소속에게도 지급 금지
- 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술대회 개최 후원 등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은 불가
- 학술활동지원비 항목에서는 국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해외 출장 경비는 집행할 수 없음
- 모든 BK21 플러스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 등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대학에 귀속
- 사업 및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 불가

마.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
- 개인명의의 특허 출원 불인정
-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BK21 플러스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 또는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의 관리를 함
- BK21 플러스 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과제물 보고서의 판권, 교육과정 개편 또는 산학협력을 통한 각종 결과물 판권 외 각종 유형적 발생품의 관리는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담당
- 지적재산권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유로 하며, 지적재산권 사용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단과 산학협력단 합의하에 자체 규정 마련 필요

바.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사용

○ 홍보비를 통해 홈페이지 개설비용 사용 가능
- 사업단 홍보 목적 플래카드, 브로셔 제작 가능

※ 홍보 기념용품 및 BK21 플러스 사업과 무관한 물품 구입 불가
- <u>학과 학생 모집 공고 등을 위한 관련 경비 집행 불가</u>

사. 회의 및 행사개최비(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

○ 사업단 개최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 다과비 등 집행 가능. 단,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 구비

○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비 집행시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

○ 주말, 자정 이후 회의비 지출은 불가능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 가능. 단, 관련 사유서 첨부 필요

❍ 식대와 관련한 회의비는 회의당 1회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음. 종일 행사 등 행사기간 및 일정 상 부득이한 경우 행사의 목적, 참석대상, 세부일정,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사전기안(사전 내부결재 필수)에 따라 추가 식대 집행 가능

부당집행 사례

○ 회의장소와 회의비 장소의 불일치
- 회의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회의비를 집행하여 그 사실관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회의비 과다 계상
- 출장중인 자 등을 회의록상의 참석자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의 회의비 청구

○ 동일일시 내 카드 중복 결제
- 동일일시에 회의비를 수차례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회의비를 청구

○ 회의비 부당 집행
- 회의비 집행시 주류대 포함, 유흥업소에서 회의비 사용 등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집행 및 사업단(팀)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집행 발견

○ 사업단(팀) 및 참여인력 명의의 식당 장부 운영
- 특정 식당에서 선 결재한 후 해당 식당을 이용

○ 간이영수증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증빙으로 회의비를 청구

○ 회의록 허위 작성
- 해외 출장기간 중인 인원이 회의 명단에 포함된 경우
- 타인의 서명 등을 도용한 경우

아. 기타 경비

❍ 상기 이외에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타경비에서 사용 가능

※ 예시
- 참여대학원생에게 우수논문경진대회 등의 사업단(팀)내 행사를 통해 지급되는 상금의 지급(연구장학금 기준 이내의 1회성 포상금인 경우에 한하며 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따라야 함)
- 자체평가에 대한 외부인원 경비 등

부당집행 유형

○ 사업단(팀)내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에게 번역료, 자문료, 원고료 등 지급

○ 기자재 구입

○ 원인행위 부재

비참여인력 국내학회등록비 및 여비 지급

- ○○대학교 ○○사업단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학원생에게 학회등록비 및 참가여비 ○○만원을 지원함
- ○○대학교 ○○사업단은 석사학위를 졸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에게 학회등록비 및 참가여비 ○○만원을 지원함

부당집행 사례2 **출장비 과다산정**

- ○○대학교 ○○사업단은 참여인력의 출장비 산정시 실제 출장일보다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서 출장비를 과다 수령하였음
- ○○대학교 ○○사업단은 출장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일찍 종료됨에 따라 조기에 돌아왔으나 기지급받은 출장비에 대한 별도 반납처리를 수행하지 않았음
- ○○대학교 ○○사업단에서 참여인력의 학회참석과 관련하여 숙박비를 실비와 정액으로 이중 청구함으로서 ○○만원의 출장비를 과다 지급받았음

부당집행 사례1

부당집행 사례3 **학회등록비에 식대 등 포함**

- ○○대학교 ○○사업단은 참여인력 ○○의 국내학회 참석과 관련하여 학회등록비 및 출장비(식비 전액)를 지원하였는데 학회등록비에 식대 등이 포함되어 식비를 이중으로 지원받음

예방책

- ▪ 참여대학원생 등 참여인력 적격여부 검증시 입학 후 지원연차 등 자격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 범위내인지 여부를 확인
- ▪ 대학실무자는 사업 연도별 참여인력 명단(최신본)을 구비하고 지출시 해당 인원으로만 경비가 지출되고 있는지 검증

※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집행되어야 하므로 BK21 플러스사업 미자격자는 해당 인원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의 연구비 등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 ▪ 출장비 산정시 공통양식 등을 통해 사업단에서 출장일, 학회등록비 중 식비 포함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이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산정하여 지급(행정의 표준화)
- ▪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한 금액이 지급되고 사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 당초 출장일정보다 실제 출장일이 짧은 경우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기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반납처리 필요(산학협력단에서는 해당 절차 안내)

알아두면 좋아요

[회의비 집행 방법]

○ 회의비 집행은 사전기안 후 집행이 원칙임. 부득이 집행 후 회의비를 청구할 때는 회의 목적/내용/결과/참여자가 명시된 회의록을 제출해야하며, 참석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함

○ 회의비 집행 시 외부참여인원 포함을 권장함

[외부 전문가 활용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자체평가, 외부자문, 초청강연을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경우 대학 규정에 따라 활용 비용 지급

○ 외부 전문가는 원칙적으로 타 기관 소속을 의미하며, 사업 수행 학과 소속 교수(비참여 교수 포함)는 전문가 활용비를 받을 수 없음(겸임, 겸직의 경우도 내부로 분류)

[논문게재료 지원시 BK21플러스 사사표기]

○ 논문실적 제출을 위한 조건에는 사사표기가 의무가 아니지만, 사업수행 학과는 명시되어야함

○ 논문게재료 지원 시에는 논문에 사사표기가 있거나 아무런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 사업과의 연관성을 증빙하여야함. 타 사업의 사사표기만 있는 경우, 사사된 사업의 사업비에서 지원받을 것을 권장함

[학회 연회비 지원]

○ 학회 연회비 및 종신회비는 현재 지원이 불가한 항목임

○ 다만 학술대회 발표 시 연회비 납부가 강제사항인 경우, 연회비 납부 시 학회등록비 할인이 있어 총액이 일반 등록비 보다 저렴할 경우는 인정함.

[특허 교육비, 멘토수당 등 전문가 수당 지급]

○ 사업단 운영비에서 강의료, 전문가 활용비 등 집행 가능함. 이때는 활동 내역과 전문가 이력사항을 증빙해야함

○ 특히 내부인원(학과 소속)에게는 지원되지 않음에 유의

9. 간접비(사업비 총액의 2% 이내)

❍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대학의 사업단(팀) 총괄관리를 위한 경비

- 산학협력단 또는 사업단(팀)의 행정직원 지원, 사무용 집기 구입, 각종 수수료 지원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

❍ 간접비에 대한 사용내역은 산학협력단에서 총괄 관리책임을 맡고, 집행 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리

- 대학의 자체 운용요령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며, 사용잔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집행 관리

Ⅳ 이월액 및 결산보고 등 관리

1. 사업비의 이월

○ 총 사업비(당해년도 사업비+전년도 이월액)의 15% 이내에서 이월 가능

※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이월가능 비율 미적용

- 이월금액은 차년도 교부액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
- 이월한도 초과금액은 사업비 교부시 감액 조치

○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시 반납

2. 결산보고

○ 매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BK21 플러스 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집행 내역은 집행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www.rndcard.re.kr)에 입력하여야 함

3. 이자수익

○ 사업연도 중 발생한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발생한 당해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사용

※ 단, 이자 발생 및 사용내역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에 포함

○ 당해연도 발생이자는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하거나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할 수 있음(반납도 가능)

Ⅷ. 사업점검 및 평가

1. 수시점검

○ 전문기간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인력의 근무 장소를 방문하는 등 사업수행 현장을 파악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 경미한 사유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사례가 3회 이상 반복 지적(전문기관 이외 타 감사기관 지적 사항 포함),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사례가 지적된 경우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삭감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경미한 부당집행 및 규정위반 건이라 하더라도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쳐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등 별도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단의 장에게 사업비의 한시적 집행 정지 등을 포함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알아두면 좋아요

사업총괄관리위원회(훈령8조)

☞ 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장관은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사업총괄관리위원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총괄관리위원회 기능]

- BK21 플러스 사업 기본계획 심의
- 선정평가, 수시점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에 관한 심의
-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사항에 대한 심의

2. 자체평가

○ 사업단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사업단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단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단장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전문기간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연차점검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차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사업단은 전문기관이 정한 연차점검 세부사항에 따른 연차점검 계획을 토대로 연차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알아두면 좋아요

['16년 이후 성과관리 기본방향] : 질 중심, 학생 중심, 사업단 자율성 확대

☞ **단기적·양적 평가는 지양하고 "중기적·질적 평가"로 전환**

- 연차점검은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하여 사업단의 자율적 개혁 및 발전 유도

☞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성과관리" 체제 구축**

- 학문분야별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상시 평가·환류 체제 구축

※ '18년 연차평가를 통해 성과평가 및 사업비 조정 등 실시 예정

4. 중간평가

○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원 질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2015년 중간평가를 실시함

○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행 전년도말까지 중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였음

○ 전문기관의 장은 기존 사업단과 신규 진입 사업단이 전면 재평가를 통해 2016년 지원 사업단을 재선정함

5. 종합평가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종료된 이후 7년간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함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함

○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음

○ 사업단은 7년간의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6. 이의제기

○ 사업단이 속한 대학의 장은 선정·연차·중간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제기 처리에 관한 사항은 훈령 제15조 규정(협약의 해지)을 준용함

7.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전문기관의 장은 훈련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연차점검 및 중간평가·종합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함

○ 장관은 훈령 제22조 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 사업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을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음

○ 장관은 훈령 제22조 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 및 성과를 낸 사업단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음

8. 자료 등의 요청

○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훈령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를 추진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사업단에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단의 장 등의 출석 요구
3.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

○ 위 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함

IX. 사업단 구성 및 관리

1. 참여교수

○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하며,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겸임교수도 인정함. 또한 참여교수의 소속이 학부와 대학원 동일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이 다를 경우 대학원 전임발령을 내야 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음.

1.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훈령 제24조의 2에 따른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 다만,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이거나, 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

○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시 공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음.

○ **대학 및 사업단이 참여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참여교수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2. 참여제한자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가 연구윤리 위반, 협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에 특정 기간 동안 참여가 제한된 연구자일 경우에는 참여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함

사업단장

1.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신청 시 : 해당 사업단의 사업 참여 제한
2. 제12조에 따른 선정평가 및 사업단 선정 시 : 사업단 탈락
3. 사업단 선정 이후 사업 관리·운영 : 사업단의 장을 교체하고 사업비 삭감 등 제재

참여교수

1.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신청 시 : 해당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 제한
2. 제12조에 따른 선정평가 및 사업단 선정 시 : 해당 교수를 사업단에서 배재
3. 사업단 선정 이후 사업 관리·운영 : 해당 교수를 교체하고 사업비 삭감 등 제재

규정위반 사례

- ○○대학교 ○○사업단장은 타 연구개발 사업 과제 포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후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행정심판 등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유로 재단에 해당 사실 보고 및 교체 절차 없이 사업단장으로 참여함

3. 참여대학원생 등

○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위 항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은 제외함

○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생 : 월 60만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이상

○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학원생 사이에서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장학금 지급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학기당 6학점 이내)를 할 수 있음

○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대학원생의 참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함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생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4. 신진연구인력

○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 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주체는 대학의 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짐

○ 박사후과정생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계약교수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디자인ㆍ영상 및 예체능 분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에게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ㆍ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음.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음
○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음
○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신진연구인력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5. 산학협력 전담인력

○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사업비 지원을 받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함.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함
○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음
○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X. 행정사항 및 성과관리

1. 지침의 제정

○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침을 제·개정할 수 있음

※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지침 주요내용 설명

Ⅰ 총 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의 위임을 받아 BK21 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 및 사업단 또는 사업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해설

①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이하 'BK21플러스관리운영지침')은 『학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는 BK21 플러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118호)』 제35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시행됨

② BK21플러스관리운영지침은 BK21 플러스 사업 운영규정을 토대로 사업 수행 과정 및 처리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사업단(팀) 사업 수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됨

○ 관련규정

- 『학술진흥법』 제7조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교육부장관은 대학생, 대학원생, 관련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자 등이 연구자의 학술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

제9조(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융자 지원하는 등 장학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지급범위 및 생활비 융자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1조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①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침의 적용 범위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별표1에 따른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의 선정 사업단(사업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 제정 취지

① 분야별 특성에 따라 사업관리와 운영방법이 다른 만큼, 전체 사업분야를 크게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분야 지침으로 나누어 지침을 제정하였음

② 본 사업의 경우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3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유형별 특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함

3. 사업기간

제3조(사업기간) 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 해설

BK21 플러스 사업은 7년(2013~2020) 동안 진행 예정이며, 사업비의 교부

및 평가를 고려하여 7개의 사업연도로 구분하고, 개별 사업연도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로 정함.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사업시작일이 2013년도 9월 1일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함

관련근거

<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

제4조(사업기간 등) ① 사업은 7년간 추진하고, 그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말까지로 한다.

② 사업연도는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점검의 시기를 고려하여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장관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협약기간을 제2항에 따른 사업연도와 다르게 소급해서 정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Ⅱ 참여대학의 의무

1. 제도개혁

제4조(제도개혁) ①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장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2. 교수업적 평가제도

②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하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정 취지

① 분야별 대학원 특성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참여대학의 연구중심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으로서의 제도적 기반 구비를 의무화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도개혁의 이행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미이행 시 협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개혁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 줌

❍ 해설

①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 총장책임하의 대학전체 체계적 통할(統轄) 관리, 연구수행과 행정의 분리,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의 체계화(구매요구-계약-검수의 분리 시스템), 시스템 전산DB화, 적정한 간접비 운용, 연구비 집행에 대한 내·외부 감사시스템 마련
- BK21 플러스 사업의 경우, 참여대학에 지급되는 사업단(팀)의 모든 사업비가 대상이 됨
- 대학전체 중앙관리 전담기구가 아닌 단과대학, 부설연구소 등에 총장이 위임하여 사업비를 관리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연구비 중앙관리」라고 할 수 없음

② 교수업적평가

- 대학의 사정과 전공계열의 성격에 따른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 교수업적평가 시스템 개선 내용을 규정화함으로써 학문분야 특성에 맞게 평가 내용과 방식을 차별화하고, 교수업적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 시스템(승진·재임용 등 인사제도 운영, 차등 연봉제 및 성과급 등에의 반영 등)을 도입하는 것을 뜻함
- 신청시 대학이 제시한 교수업적평가 개선안의 실행 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게 됨

2. 연구윤리 확립

제5조(연구윤리 확립) ①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 사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과목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정 여부,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과목 개설 등을 점검하여 각종 평가에서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전체 사업단을 대상으로 논문실적 및 결과물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윤리를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단에 대하여 사업비 조정, 사업 참여 배제, 해당 사업단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 외에도, 언론보도, 민원접수, 제보 등을 통해 BK21 플러스 사업단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대학원생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에 자체 점검을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관련자에 대한 사업 참여 배제,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정 취지

- BK21 플러스 사업 학계의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팀)의 사업수행 및 교육과정 운영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을 권장하고, 무작위 포본 추출조사를 통해 엄격한 사업성과 관리를 수행하게 됨

❍ 해설

① 연구윤리 교육 도입 권장

-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준비 : 대학 또는 사업단(팀)에서 보편적인 연구윤리 교육 내용 마련
- 대학원 교육과정에「연구윤리」과목을 개설하도록 유도

② 무작위 표본추출검증 제도(spot check) 실시

- 엄정한 사업 성과관리를 위해 무작위 표본 추출검증 제도를 도입하여 논문실적 및 결과물에 대한 조사
- 연구실적, 행·재정 사항의 각종 지표 달성값 등 사업 수행 실적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검증 결과 조치 : 해당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의 사업 참여 배제, 사업에 따라 해당 사업단의 사업비 삭감 또는 협약해지

③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제재

- 사업참여인력이「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참여 제한 조치 가능

3. 사업비집행신고센터

제6조(사업비집행신고센터)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으로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내부 신고센터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 제정 취지

-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관련 부정을 예방하고, 민원을 조기 발굴하여 해결하기 위한 자율 통제 장치로 내부 신고센터 설치를 의무화 함

○ 해설

- 대학 산학협력단·사업단(팀) 홈페이지 등에 온라인 신고센터 등을 설치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를 통해 사업 수행 과정과 관련된 각종 불법, 부당한 행위 접수
- 일차적으로 사업단(팀)의 자체 점검 과정으로 활용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별도 조치 시행

4. 대학의 의무사항

제7조(대학의 의무사항) ① 대학의 장은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BK21 플러스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 내용 등의 준수에 대한 책임
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
4. 기타 전문기관 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
5. 사업 신청 당시 제시한 사업단 지원 사항 이행

② 복수의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일부 교수 및 학생들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2014년도까지 단일의 대학원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상의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참여교수를 해당 학과 또는 협동과정에 전임으로 발령하여야 하고(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겸임발령도 허용한다.), 해당 학과 또는 협동과정 소속 참여대학원생을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 단일 학과 또는 단일 협동과정의 편제가 완성되기 전까지 운영된 학과 또는 협동과정의 참여대학원생은 2017년 2월까지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이 가능하다.

○ 제정 취지

- BK21 플러스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단(팀) 뿐만 아니라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 차원의 책임 및 의무 규정화

○ 해설

① 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

- 정기적, 자체적으로 사업단(팀)에 대한 사업운영과정, 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점검 실시
- BK21 플러스 사업 담당 실무자 대상 사업관리 및 집행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② 사업단(팀) 구성원 정보관리

- 『대학원생등에대한재정지원정보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에 의한 월별 인건비 지급 대상 및 지급액 등 총괄 관리

Ⅲ 사업단(팀)의 구성 및 운영

1. 사업단(팀)장

제8조(사업단의 장) ① 사업단의 장은 각 유형별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의 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참여 학사조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한다.

④ 대학 및 사업단은 휴직,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사업단의 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단의 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사업단의 장은 본 지침 제10조에 따른 참여교수 변경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1년 이내의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6개월 이내의 국외) 연구 수행으로 사업단의 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의 장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사업단의 장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직을 변경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의 장이 사망하여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으로 인해 사업단의 장이 부재 시에는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변경하거나 참여교수 중 한명이 사업단의 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⑧ **사업단의 장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SRC, ERC, MRC, NCRC(GCRC 포함), ITRC, CRC 등) 및 연간 연구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연구책임자의 직을 사임할 때는 예외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정 취지

- 사업단(팀)장의 권한 및 자격과 변경 그리고 제한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해설

- 사업단(팀)장 자격
  - 사업참여 대학원 학사조직(학과 또는 학부)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
  - 휴직,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사업단(팀)장 변경시 전문기관 장의 승인 필요

※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1항의 예외규정**에 따른 "1년 이내의 국내외 파견중인 교수", **2항의 예외 규정**에 따른 "연구년 또는 안식년,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인 자 중 학생지도 활동(논문지도 등) 수행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사업단(팀)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사업단(팀)장』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사업단(팀)장은 BK21플러스관리운영지침 제10조에 따른 참여교수 변경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1년 이내의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6개월 이내의 국외) 연구수행으로 사업단(팀)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팀)장 직위 변경 없이 사업 수행이 가능함
  -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으로 인한 사업단장 부재 시 사업단장 변경 또는 참여교수 중 한명의 대리체제 운영 선택→대학의 장 승인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의무**

※ 사업단(팀)장 대리체제 인정 이유

1년 이내의 단기 부재시 대학의 장이 허가하는 경우, 사업단(팀)장 교체보다는 대리체제 운영이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과 사업의 안정적 수행 측면에서 바람직함

-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 및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의 연구책임자 겸직 불가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연구책임자의 직을 사임할 때는 예외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규정위반 사례

- ○○대학교 ○○사업단의 장은 BK21플러스사업 사업단장직 수행도중 타 부처의 10억 이상 연구과제 책임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단장 변경절차를 밟지 않음

○ 제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

[사례 연구]

1 사업단(팀)장의 자질 문제

- 사업단(팀)장이 사업운영에 무관심 또는 사업비 유용 등으로 인해 사업성과 달성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사업단(팀) 장 변경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시 불이익이 우려되어 변경하지 않음

사업단(팀)장의 부재

- 사업단(팀)장의 연구년 또는 외부 파견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에도 평가시 불이익이 우려되어 변경하지 않음

사업단(팀)장의 국가주도 대형연구개발사업 및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인 사업의 연구책임자 계속 수행

- 사업단(팀)장이 신청 당시 ERC 연구책임자였으며 선정 후 6개월이 지나도 그 직을 사임하지 않고 계속 수행

[검토의견]

- , 사례의 경우 BK21 플러스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써, 당연히 사업단(팀)장을 교체하여야 할 사항임. 교체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교체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사업 운영임
- 의 사례에서, 사업단(팀)장 자격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연구년, 해외 파견 등으로 인한 부재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대리체제 운영 허용
- 의 사례는 사업단(팀)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으로써 수시점검 등을 통해 미이행사항 발견 시 협약해지까지 고려되는 심각한 사안임

2. 참여교수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라고 한다.)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해당 대학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全日制)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ㆍ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재임용 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재임용 횟수가 제한되었거나, 학과 학생 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과간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으로 사업에 선정된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해당 협동과정에 겸임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사업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사업단의 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지침 제9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사업단의 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단의 참여교수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지침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의 참여교수가 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전문대학원에 참여하여 학과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참여교수로 인정할 수 있다.

❍ 해설

① 참여교수

-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된 전임교원으로 함
- 재임용 심사자격 미부여 및 재임용 횟수 제한자와 학과 학생 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은 참여교수로서의 자격이 없음

- 참여교수의 전임발령 소속은 사업단 소속 대학원 학과(부)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 학과(부)가 동일체제일 경우 학사과정의 학과 전임발령을 예외적으로 인정
- 다만,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융복합 분야 및 특화전문인재양성형에 협동과정으로 지원한 사업단에 한하여 협동과정 겸임발령 인정

※ 협동과정의 경우 반드시 전임 또는 겸임발령 조치하여야 함

알아두면 좋아요

○ **대학원 전임 발령 필요(대학원 전임 발령 기준이 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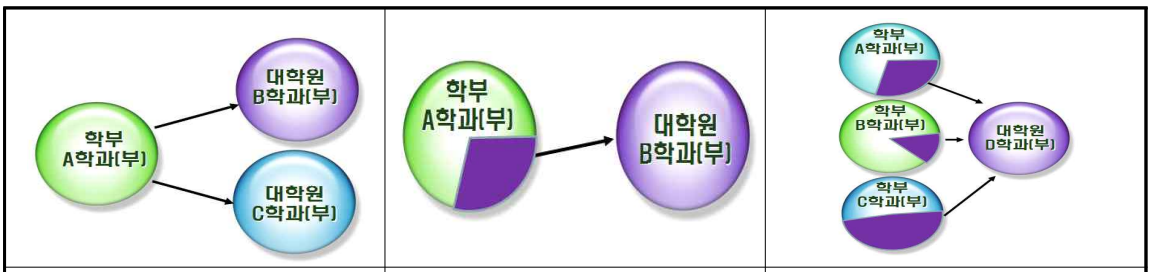

한 개의 학과(부)가 2개 이상의 대학원 학과(부) 운영	한 개의 학과(부)의 일부 교수만 참여하여 대학원 학과(부) 운영	복수의 학과(부)의 일부 교수가 대학원 학과(부)에 소속되어 운영

○ **대학원 소속 전임 발령이 필요 없으며, 학부 교원 전원이 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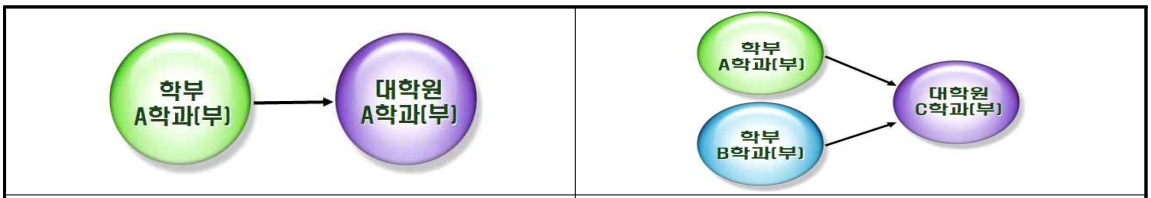

학부와 대학원 체제 동일	학부에서 두 개의 학과(부)가 한 개의 대학원 운영

관련근거

<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

제24조(참여교수)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로 하며,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겸임교수도 인정한다. 또한 참여교수의 소속이 학부와 대학원 동일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이 다를 경우 대학원 전임발령을 내야 한다. 그 외에 참여교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 전임교원이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를 의미하며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등은 제외

제17조(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6.>

-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또는 안식년 및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는 제외
- 단,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이라도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 수행이 가능하여 사업단(팀)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참여 가능

관련근거

<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

제24조(참여교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1.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다만,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인 교수는 본문의 단서에 따른다.)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정한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③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시 공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④ 대학 및 사업단이 제3항에 따라 참여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교수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으며, 참여교수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해 참여교수의 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함. 위반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참여교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④ 참여교수 변경시 사업단(팀)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변경 승인 요청(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변경 신청)

사업단(팀)장 교체 및 참여교수 변경 요점 정리

1. 기본원칙

○ 사업단(팀)장 교체 및 참여교수 변경 요청은 재단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 검토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의 절차를 통하여 승인 여부가 결정됨

- 따라서, 사업단(팀)장 교체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참여교수의 변경은 사업목적의 부합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심의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함

○ 사업단(팀)장 및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 적격여부는 일차적으로 사업단(팀)에서 검증 후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함

○ 사업단(팀)장 교체 및 참여교수 변경은 **승인 시점부터 발효 시기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

- 참여 사업단(팀)의 요청에 따른 재단의 승인일자부터 BK21 플러스 사업 사업단(팀)장 및 참여교수로 인정
- 평가 관련 실적도 재단의 승인일자부터 인정

※ 해당 대학의 행정처리와 승인 심의 기간을 감안하여 승인 요청 바람

○ 사업단(팀)장 교체 및 참여교수 변경 요청은 반드시 BK21 플러스 사업 종합정보시스템(http://bkplus.nrf.re.kr/bks)을 통해 요청하여야 함

※ 사업단(팀)장 교체 및 참여교수 변경 요청은 산학협력단의 검토 및 확인을 반드시 거쳐 신청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에서는 참여교수 변경 신청에 대한 재단 검토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함

2. 사업단(팀장) 교체 및 참여교수 변경 승인 처리기준

1 사업단(팀)장 교체 승인 사유 구분에 따른 처리 기준

○ 기본적으로 BK21 플러스 사업 공고상의 사업단(팀)장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함

※ [BK21 플러스 사업 공고상의 사업단(팀)장 및 참여교수 자격요건] 참고

○ 사업단(팀)장 교체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재단의 검토 후 진행 가능

2 참여교수 변경 사유 구분에 따른 처리 기준

○ BK21 플러스 사업 공고상의 참여교수 자격요건 만족시 변경 가능

※ [BK21 플러스 사업 공고상의 사업단(팀)장 및 참여교수 자격요건] 참고

○ 참여교수 증원의 경우

- 사업단에서 참여교수를 변경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
- 참여교수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지침 제9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참여교수 감원의 경우

- 사업 신청 시(중간평가 이후 재선정신청서 기준) 참여교수 수를 기준으로 기준 미만의 감원 불가능

- 다만, 참여교수의 이직, 사망 등의 사유로 참여교수의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된 경우에는 결원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 임용 등을 통해 당초 신청 당시 기준 수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 결원 발생시점부터 6개월 인내 결원 미충원 시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단(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사업단(팀)장 교체 절차

1 사업단(팀)장의 자격 요건 검증

○ 사업단(팀)장은 참여교수의 일원이므로 참여교수의 자격 검정 선행 필수

- 전임교원 여부, 휴직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등 참여제한 여부 검증

○ 사업단(팀)장 자격 요건 검증 : BK21 플러스 사업 공고상의 사업단(팀)장 자격요건, 연구실적 자격요건,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8조(사업단의 장) 참조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 등록 확인 : 신규 사업단(팀)장의 KRI (www.kri.go.kr) 등록 여부 및 최신정보 업데이트 확인

※ 사업단(팀)장 대리체제의 경우 일정기간 내 대리운영 예정 사업단(팀)장은 참여교수 자격을 충족하면 대리체제 가능

2 변경요청(BK21 플러스 사업 종합정보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http://bkplus.nrf.re.kr/bks)의 참여교수 변경 절차에 따라 온라인 요청

※ 변경요청 시 해당 붙임자료 첨부(붙임자료 양식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① 사업단(팀)장 교체사유서(사업단(팀)장 교체시 제출)

② 신규 사업단(팀)장 자격요건 관련 서류(확약서, 연구실적 등)

③ 사업단(팀)장 대리체제 승인 서류(사업단(팀)장 대리체제 신청시 제출)

3 변경승인

○ 사업단(팀)장 교체 승인

- 산학협력단의 자격 요건 검정 및 승인 후 연구재단 최종 승인(연구재단 승인시 종합정보시스템 즉시 반영)

4. 참여교수 변경 절차

1 참여교수 자격 요건 검증

○ 참여교수 자격 요건 검증 : 참여교수의 자격 검증 선행 필수

- 전임교원 여부, 휴직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등 참여제한 여부 검증

2 변경 기준에 따른 연구실적 요건 검증

① 참여교수 증원

- 의미 : 사업단(팀) 소속의 기존 참여교수 이외에 새로운 교수가 사업단(팀)에 참여하여 사업단(팀)의 전체 참여교수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 신청자격 기준 : 신규임용교원과 기존 전임교원 구분 없이 BK21 플러스 사업 공고상의 참여교수 자격요건 기준 만족시 신청 가능(자격 및 논문실적 등)

② 참여교수 감원

- 의미 : 사업단(팀) 소속의 기존 참여교수가 사업 참여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업단(팀)의 전체 참여교수의 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 신청자격 기준 : 사업단(팀)의 사업 신청(중간평가 이후 재선정신청서 기준) 당시 참여교수 수를 유지해야 함

※ 참여교수 교체의 경우 기존 참여교수 감원과 신규 참여교수 증원으로 정의함

3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 등록 확인 : 신규 참여교수 및 외국인 교수의 KRI(www.kri.go.kr) 등록 여부 및 최신정보 업데이트 확인

4 변경요청(BK21 플러스 사업 종합정보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http://bkplus.nrf.re.kr/bks)의 참여교수 변경 절차에 따라 온라인 요청

※ 변경요청 시 해당 붙임자료 첨부(붙임자료 양식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① 확약서
②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목록
③ 전체 참여교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통계
④ 재직증명서 등

5 변경승인

❍ 참여교수 교체 승인 처리 안내

- 산학협력단의 자격 요건 검정 및 승인 후 연구재단 최종 승인(연구재단 승인시 종합정보시스템 즉시 반영)

사업단(팀)장, 참여교수 자격 기준

□ 자격요건(공통)

1 사업단(팀)장 자격요건

❍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관련 규정상 참여제한 중이지 않은 자

❍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학사조직의 장을 권장

❍ 1년을 초과하는 연구년, 이직, 퇴직 등으로 인한 변경 시 **전문기관 장의 사전 승인 필요**(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 가능)

- 1년 이내의 연구년 중 국내(6개월 이내의 국외)연구의 경우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팀)장직 수행
-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일 경우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교수 중 대리체제 또는 사업단장 변경(사업단(팀)장 직위를 대리하는 참여교수는 재단에 보고하여야 함)

○ SRC, ERC, NCRC(GCRC), MRC, IBS, CRC 등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 및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 사업의 연구책임자 겸직 불가
(단,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책임자 직을 사임 시 가능)

2 참여교수 자격요건(공통)

○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관련 규정상 참여제한 중이지 않은 자

○ 참여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교원으로 하며, 해당 사업단이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겸직발령도 인정

○ 참여교수의 소속은 대학교 학과(학부)와 대학원 학과(학부)가 동일소속이 원칙

○ 참여교수가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 일 경우 대학의 장 및 사업단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연구실적 요건

1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 **과학기술분야** :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이 4편 이상이 되어야 함(단, 수학분야는 3년간 1.2편 이상)

참여교수 자격요건 인정 항목 및 환산 방법(과학기술 분야)

※ 대상분야 :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생명·수산·해양, 과기기반 융복합

※ 연구실적 산정기간 : 최근 3년

※ 연구실적 산정기준일 : 연구논문(게재일)

※ 참여 교수의 자격요건과 관련한 연구실적은 아래 환산 방법을 적용하여 작성

☞ **SCI급(SCI 및 SCIE) 학술지 게재 논문**

1) 참여교수가 연구자로 포함된 논문은 주저자, 공저자의 구분 없이 교수별로 각 1건으로 인정함 (예 : A 및 B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의 경우 A교수 1건, B교수 1건으로 인정)

2) 동일한 연구논문은 발간형태가 다르더라도(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등) 중복 계산할 수 없음

3) 공학분야의 정보기술 패널 중 Computer Science 분야의 경우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도 SCI(E) 학술지 게재 논문과 동일하게 인정

*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목록 참조

[참조] 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 국제학술대회 목록

※ '15년 중간평가 기준으로 추후 변경 가능

코드	학술대회명
BKCS0001	ACM Conference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Security
BKCS0002	ACM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BKCS0003	ACM SIGCOMM Conference
BKCS0004	ACM SIGKDD Conference on Knowledge Discovery and Data Mining
BKCS0005	ACM SIGSOFT Symposium on the Foundations of Software Engineering
BKCS0006	ACM Symposium on Operating Systems Principles
BKCS0007	ACM Symposium on Theory of Computing
BKCS0008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BKCS0009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BKCS0010	Conference o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BKCS0011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Systems
BKCS0012	IEEE Symposium on Foundations of Computer Science
BKCS0013	IEEE Symposium on Security and Privacy
BKCS0014	IEEE Visualization
BKCS0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BKCS001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BKCS0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Data
BKCS0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BKCS0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ery Large Databases
BKCS0020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 Architecture
BKCS0021	SIGPLAN Conference on Programming Language Design and Implementation
BKCS0022	Symposium on Principles of Programming Languages
BKCS0023	USENIX Conference on File and Storage Technologies
BKCS0024	USENIX Symposium on Networked Systems Design and Implementation
BKCS0025	World-Wide Web Conference
BKCS0026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BKCS0027	ACM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BKCS0028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Computing and Systems
BKCS0029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Systems, Application and Services
BKCS0030	ACM Measurement and Modeling of Computer Systems
BKCS0031	ACM SIGIR Conference on Information Retrieval
BKCS0032	ACM SIGPLAN Symposium on Principles and Practice of Parallel Programming
BKCS0033	ACM Symposium on Principles of Database Systems
BKCS0034	ACM Symposium on User Interface Software and Technology
BKCS0035	ACM/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High Performance Computing, Networking, Storage, and Analysis
BKCS0036	ACM-SIAM Symposium on Discrete Algorithms
BKCS0037	Annual Symposium on Computational Geometry
BKCS0038	Architectural Support for Programming Languages and Operating Systems
BKCS0039	Conference on Object-Oriented Programming, System, Languages, and Applications
BKCS0040	Design Automation Conference
BKCS0041	Eurographics
BKCS0042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BKCS0043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Mining
BKCS0044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 Performance Distributed Computing
BKCS0045	IEEE Real-Time and Embedded Technology and Applications Symposium

코드	학술대회명
BKCS0046	IEEE Real-Time Systems Symposium
BKCS0047	IEEE Symposium on Logic in Computer Science
BKCS0048	IEEE/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omated Software Engineering
BKCS004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Computer Architecture
BKCS005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Graphics and Interactive Techniques
BKCS005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Engineering
BKCS005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Networking EXperiments and Technologies
BKCS005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xtending Database Technology
BKCS005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nctional Programming
BKCS005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allel Architectures and Compilation Techniques
BKCS0056	International Cryptology Conference
BKCS0057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BKCS0058	International Semantic Web Conference
BKCS0059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Performance Computer Architecture
BKCS0060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architecture
BKCS0061	Network and Distributed System Security Symposium
BKCS0062	USENIX Annual Technical Conference
BKCS0063	USENIX Security Symposium
BKCS0064	USENIX Symposium on Operating Systems Design and Implementation
BKCS0065	ACM Annual Computer Security Applications Conference
BKCS0066	ACM Conference on Bioinformatics, Computational Biology, and Health Informatics
BKCS0067	ACM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BKCS0068	ACM Conference on Embedded Networked Sensor Systems
BKCS0069	ACM Conference on Embedded Software
BKCS0070	ACM Conference on Online Social Networks
BKCS0071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upercomputing
BKCS0072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b Search and Data Mining
BKCS0073	ACM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Pervasive and Ubiquitous Computing
BKCS0074	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Memory Management
BKCS0075	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Mobile Ad Hoc Networking and Computing
BKCS0076	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ftware Testing and Analysis
BKCS0077	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Symbolic and Algebraic Computation
BKCS0078	ACM International Workshop on Mobile Computing Systems and Applications
BKCS0079	ACM Internet Measurement Conference
BKCS0080	ACM Multimedia Conference
BKCS0081	ACM Multimedia Systems Conference
BKCS0082	ACM Network and Operating System Support for Digital Audio and Video
BKCS0083	ACM SI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Graphics and Interactive Techniques
BKCS0084	ACM SIGGRAPH / Eurographics Symposium on Computer Animation
BKCS0085	ACM SIGGRAPH Symposium on Interactive 3D Graphics and Games
BKCS0086	ACM SIGPLAN Conference on Languages, Compilers and Tools for Embedded Systems
BKCS0087	ACM SIGPLAN conference on Systems, Programming, Languages and Applications: Software for Humanity
BKCS0088	ACM SIGPLAN/SIGOP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Virtual Execution Environments
BKCS0089	ACM Symposium on Access Control Models and Technologies (previously RBAC)
BKCS0090	ACM Symposium on Applied Computing
BKCS0091	ACM Symposium on Cloud Computing
BKCS0092	ACM Symposium on Parallelism in Algorithms and Architectures
BKCS0093	ACM Symposium on Principles of Distributed Computing

코드	학술대회명
BKCS0094	ACM Symposium on Virtual Reality Software and Technology
BKCS0095	ACM Workshop on Hot Topics in Networks
BKCS0096	ACM/IEEE Information Processing in Sensor Networks
BKCS0097	ACM/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del Driven Engineering Languages and Systems
BKCS0098	ACM/IEEE Symposium on Architectures for Networking and Communications Systems
BKCS0099	ACM/IFIP/USENIX International Middleware Conference
BKCS0100	Algorithms and Data Structures Symposium (Formerly, Workshop on Algorithms and Data Structures)
BKCS0101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BKCS0102	Annu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earning Theory
BKCS0103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EEE Engineering in Medicine and Biology Society
BKCS0104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BKCS0105	Annual Symposium on Combinatorial Pattern Matching
BKCS0106	Asian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BKCS0107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and Understanding/Spoken Language Technology
BKCS0108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Human Language Technologies
BKCS0109	Conference on Software Engineering Education and Training
BKCS0110	Conference on Uncertainty in Artificial Intelligence
BKCS0111	Design Automation and Test in Europe Conference
BKCS0112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BKCS0113	Eurographics Conference on Visualization
BKCS0114	Eurographics symposium on Geometry Processing
BKCS0115	EuroMicro on Real-Time Systems
BKCS0116	European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BKCS0117	European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BKCS0118	European Conference on Computational Biology
BKCS0119	European Conference on Object Oriented Programming
BKCS0120	European Conference on Parallel Processing
BKCS0121	European Symposium on Algorithms
BKCS0122	European Symposium on Programming
BKCS0123	European Symposium on Research in Computer Security
BKCS0124	Genetic and Evolutionary Computation
BKCS0125	IEEE Bioinformatics and Bioengineering
BKCS0126	IEEE Computational Systems Bioinformatics Conference
BKCS0127	IEEE Computer Security Foundation Symposium
BKCS0128	IEEE Conference on Computer Communications
BKCS0129	IEEE Conference on Information Visualization
BKCS0130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coustics,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BKCS0131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vanced Video and Signal-Based Surveillance
BKCS013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oud Computing
BKCS0133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luster Computing
BKCS013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Informatics & Cognitive Computing
BKCS013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Design
BKCS0136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tributed Computing in Sensor Systems
BKCS013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tributed Computing Systems
BKCS013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age Processing
BKCS013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ssive Storage Systems and Technology
BKCS0140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obile Adhoc and Sensor Systems
BKCS0141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twork Protocols

코드	학술대회명
BKCS014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ttern Recognition
BKCS0143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ervasiv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BKCS0144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BKCS014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ensing, Communication, and Networking
BKCS0146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Maintenance and Evolution
BKCS014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ftware Testing, Verification and Validation
BKCS0148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BKCS0149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b Services
BKCS0150	IEEE International Parallel and Distributed Processing Symposium
BKCS0151	IEEE International Requirements Engineering Conference
BKCS0152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Low-Power Electronics and Design
BKCS0153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xed and Augmented Reality
BKCS0154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Multiple-Valued Logic
BKCS0155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erformance Analysis of Systems and Software
BKCS0156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Software Reliability Engineering
BKCS0157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on Workload Characterization
BKCS0158	IEEE Symposium Model Analysis and Simulation of Computer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s
BKCS0159	IEEE Symposium on Computational Complexity
BKCS0160	IEEE Symposium on Reliable Distributed Systems
BKCS0161	IEEE Virtual Reality Conference
BKCS0162	IEEE World Congress 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BKCS0163	IEEE World Haptics Conference / IEEE Haptics Symposium
BKCS0164	IEEE/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Aided Design
BKCS0165	IEEE/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id Computing
BKCS0166	IEEE/ACM International Symposium on Cluster, Cloud, and Grid Computing
BKCS0167	IEEE/IFI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pendable Systems and Networks
BKCS0168	IEEE/IFIP Network Operations and Management Symposium
BKCS0169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BKCS0170	IFIP Internati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Conference
BKCS0171	IFIP WG 7.3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mputer Performance, Modeling, Measurements and Evaluation
BKCS0172	International Colloquium on Automata, Languages and Programming
BKCS0173	International Computing and Combinatorics Conference
BKCS017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tatistics
BKCS017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omated Planning and Scheduling
BKCS017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utonomous Agents and Multi-agent Systems
BKCS017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iler Construction
BKCS017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ilers, Architecture, and Synthesis for Embedded Systems
BKCS017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Aided Verification
BKCS018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currency Theory
BKCS018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base Theory
BKCS018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dware/Software Codesign and System Synthesis
BKCS018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gh Performance and Embedded Architectures and Compilers
BKCS018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igh Performance Computing
BKCS018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mage and Video Retrieval
BKCS018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Tutoring Systems
BKCS018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User Interfaces
BKCS018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active Theorem Proving
BKCS018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gic Programming

코드	학술대회명
BKCS0190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edical Image Computing and Computer Assisted Interventions
BKCS019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rallel Processing
BKCS019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inciples of Knowledge Representation and Reasoning
BKCS019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Cryptology and Information Security
BKCS0194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Theory and Applications of Cryptographic Techniques
BKCS019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ools and Algorithms for Construction and Analysis of Systems
BKCS019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eblogs and Social Media
BKCS0197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utomated Reasoning
BKCS0198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BKCS0199	International Static Analysis Symposium
BKCS0200	International Symposium on Algorithms and Computation
BKCS0201	International Symposium on Code Generation and Optimization
BKCS0202	International Symposium on Distributed Computing
BKCS0203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cent Advances in Intrusion Detection
BKCS0204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oretical Aspects of Computer Science
BKCS0205	Pacific Conference on Computer Graphics and Applications
BKCS0206	Pacific Symposium on Biocomputing
BKCS0207	Robotics: Science and Systems Conference
BKCS0208	SIAM Conference on Parallel Processing for Scientific Computing
BKCS0209	SIA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ata Mining
BKCS0210	Symposium On Usable Privacy and Security
BKCS0211	Theory of Cryptography Conference
BKCS0212	USENIX Workshop on Hot Topics in Operating Systems
BKCS0213	USENIX Workshop on Hot Topics in Storage and File Systems
BKCS0214	USENIX Workshop on Power-Aware Computing and Systems
BKCS0215	Workshop on Cryptographic Hardware and Embedded Systems

❍ **인문사회분야** :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이 3편 이상이 되어야 함(단, 디자인·영상분야는 3년간 2편 이상)

참여교수 자격요건 인정 항목 및 환산 방법(인문사회 분야)

※ 대상분야 : 인문학, 사회과학, 디자인·영상, 인사기반 융복합

※ 연구실적 산정기간 : 최근 3년

※ 연구실적 산정기준일 : 연구논문(게재일), 저서(출판일)

※ 참여 교수의 자격요건과 관련한 연구실적은 아래 환산 방법을 적용하여 작성

□ 공통사항

☞ **참여교수 논문 및 저서 인정 기준**

1) 참여교수가 연구자로 포함된 논문은 주저자, 공저자의 구분 없이 교수별로 각 1건으로 인정함 (예 : A 및 B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의 경우 A교수 1건, B교수 1건으로 인정)

2) 동일한 연구논문은 발간형태가 다르더라도(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등) 중복 계산할 수 없음

3) 연구실적은 각 논문 및 저서별 가중치를 고려한 편수로 인정함

□ 업적별 평가 기준 및 인정 범위

구 분	평 가 항 목		1건당 인정편수	인정 범위
학술 논문	국제저명학술지		3편	A&HCI, SSCI, SCI(E) 등재학술지
	기타 국제학술지		1편	국제저명학술지는 아니나 정식 심사를 거치는 국제 유수 학술지
	국내학술지		1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학술 저서 (단행본)	학술저서	국어 저서	2편	학술적 가치를 지닌 학술저서에 한함(교과서, 교양도서, 연구용역보고서, 기존 발간 논문을 편집한 저서 등 제외), 번역서의 경우 학술저서에 한하며 패널 심사위원의 검증을 거침
		외국어 저서	3편	

※ 인문학분야는 국제저명학술지 1건당 1.5편으로 인정

□ 창작물 실적 (※ 디자인.영상 분야 참여교수에 한하여 추가로 인정)

☞ 국내외 저명 작품전/영화제/공모전 수상 등의 건수를 상기 경우(학술논문)와 같이 편수 환산

2 글로벌인재양성형

❍ 최근 3년간의 연구실적이 4편 이상이 되어야 함(단, 수학분야는 3년간 1.2편 이상)

참여교수 자격요건 인정 항목 및 환산 방법

※ 연구실적 산정기간 : 최근 3년

※ 연구실적 산정기준일 : 연구논문(게재일)

※ 참여 교수의 자격요건과 관련한 연구실적은 아래 환산 방법을 적용하여 작성

☞ **SCI급(SCI 및 SCIE) 학술지 게재 논문**

1) 참여교수가 연구자로 포함된 논문은 주저자, 공저자의 구분 없이 교수별로 각 1건으로 인정함 (예 : A 및 B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의 경우 A교수 1건, B교수 1건으로 인정)

2) 동일한 연구논문은 발간형태가 다르더라도(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등) 중복 계산할 수 없음

3) Computer Science 분야의 경우 acceptance ratio가 30% 이내인 학술대회 또는 IEEE, ACM, USENIX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SCI(E) 학술지 게재 논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음

3 특화전문인재양성형

❍ 별도의 연구실적 요건 없음

참고

○ **사업단(팀)장, 참여교수 변경 관련 붙임 자료 작성 양식**

※ 확약서, 교체사유서, 신규 사업단(팀)장 및 참여교수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목록, 전체 참여교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통계, 재직증명서 등

※ BK21 플러스 사업 홈페이지(http://bkplus.nrf.re.kr)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1) 확약서 양식(신규 사업단장 및 신규 참여교수 작성)

확 약 서

학교명 : ○○대학교
소속학과(부) : ○○학과(부)
사업단(팀)명 : ○○○○○○○사업단(팀)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으며, 동 사업단(팀)에 참여하여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동 사업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 ○○

홍 길 동 (서명)

2) 교체사유서 양식(사업단장자격 이전의 경우 작성)

사업단(팀)장 교 체 사 유 서

학교명 : ○○대학교
소속학과(부) : ○○학과(부)
사업단(팀)명 : ○○○○○○○사업단(팀)
수행기간 : 201○.○○.○○~201○.○○.○○
사유 : (사유기재)

201○. ○○. ○○

기존사업단장 : 홍 길 동 (서명)
변경사업단장 : 홍 길 순 (서명)

3) 전체 참여교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통계

- 과학기술분야(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생명·수산·해양, 과기융복합, 글로벌인재양성형)

연번	성명	최근 3년간 연구실적(201○.○○.○○ ~ 201○.○○.○○) SCI(급) 논문 건수	총계
1			
2			
3			
4			
5			
6			
7			
8			
9			
10			
사업단(팀) 참여교수 전체수 : 명		총 건(합계)	참여교수 1인당 평균 건

※ 참여 종료 교수는 명단에서 제외하고 신규참여교수는 명단에 포함해서 작성

- 인문사회분야(인문학, 사회과학, 디자인·영상, 인문융복합)

연번	성명	최근 3년간 연구실적(201○.○○.○○ ~ 201○.○○.○○)														총계 (환산편수)
		국제저명 학술지		연구재단 등재지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기타 국제학술지		학술저서			국내·외 전시회/공모전 /영화제 출품 (디자인/영상)			
		건수	환산 편수	건수	환산 편수	건수	환산 편수	건수	환산 편수	구분	건수	환산 편수	구분	건수	환산 편수	
1	홍길동	1	3	1	1	1	1	1	1	국내	1	2	국내	1	1	15
										국제	1	3	국제	1	3	
2																
3																
4																
5																
사업단(팀) 참여교수 전체수 : 00명																참여교수 1인당 환산 평균 00편

※ 참여 종료 교수는 명단에서 제외하고 신규참여교수는 명단에 포함해서 작성

4) 신규 참여교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현황

- 과학기술분야(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생명·수산·해양, 과기융복합, 글로벌인재양성형)

연번	연도	구분	ISSN	논문제목	게재년월	게재 학술지명(권, 쪽)
1	2014	SCI				
2	2014	SCIE				
3	2015	SSCI				
4	2016	A&HCI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인문사회분야(인문학, 사회과학, 디자인·영상, 인문융복합)

□ 최근 3년간 국제저명학술지(SCI, SCI(E), SSCI, A&HCI)

연번	연도	구분	ISSN (e-ISSN)*	논문제목	게재년월	게재 학술지명(권, 쪽)	환산편수
1	2014	SCI					
2	2015	SCIE					
3	2016	SSCI					

* 인문학분야 및 사회과학분야에 한하여 e-ISSN번호 입력 가능. 단, 국제저명학술지 중 인쇄물로 출판되지 않았으나, online으로 사전에 공개된 논문에 한함

□ 최근 3년간 기타국제학술지

연번	연도	ISSN	논문제목	게재년월	게재 학술지명(권, 쪽)	환산편수
1	2014					
2	2014					
3	2015					

□ 최근 3년간 국내학술지(연구재단등재(후보)지)

연번	연도	ISSN	논문제목	게재년월	게재 학술지명(권, 쪽)	환산편수
1	2013					
2	2013					
3	2014					

□ 최근 3년간 학술저서

연번	연도	국어/외국어	ISBN	저서명	출판년월	환산편수
1	2013	국어				
2	2013	외국어				
3	2014	외국어				

□ 최근 3년간 창작물 출품 실적(전시회/공모전/영화제) **※ 디자인/영상분야에 한하여 작성**

연번	연도	국제/국내	구분	전시회/공모전/영화제명	작품명	개최연월	환산편수
1	2013	국제	전시회				
2	2013	국내	공모전				
3	2014	국제	영화제				

3. 참여대학원생

제11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여대학원생이 휴학·취업·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 사업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

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⑦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⑧ 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⑨ 사업단의 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사업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단의 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지침 제11조에 의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사업단의 장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제정취지

- 사업공고문 및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를 근거로 국고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참여대학원생의 자격 및 의무를 세부적으로 규정

관련근거

<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

제25조(참여대학원생 등)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③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60만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이상

⑤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학원생 사이에서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장학금 지급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⑦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대학원생의 참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생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해설

1 참여대학원생 자격

-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함

※ **WCU사업 수행을 위해 신설된 학과의 교수가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속학과를 변경한 경우, 겸임하고 있는 원 소속학과의 지도학생은 '17년 2월까지만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가능**

-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미가입자

※ **4대 보험 중 1개 이상의 보험가입자는 참여대학원생 자격 불인정**

- 단, 4대 보험 가입자라 할지라도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가능(이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함)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연속하여 무급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 매년 4월 1일, 10월 1일(학기별 확인) 기준 해당 학기 등록자
- 매년 4월 1일, 10월 1일(학기별 확인) 기준 해당 학기 연한 충족자
  - 석사과정 입학 후 2년 이내, 박사과정 입학 후 4년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후 6년 이내만 인정(단, 군복무 및 휴학 기간은 위 기간에 미산입)
- 학위과정 수료자의 경우 석사과정 입학 후 2년 이내, 박사과정 입학 후 4년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후 6년 이내이면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 인정

관련근거

< 공 지 >

BK21 플러스 사업의 참여대학원생은 4대보험 미가입자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연구조교 등 4대보험 가입자는 참여대학원생이 될 수 없음

(BK21 플러스 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14.3.24))

2 참여대학원생의 의무

-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함
- 전문기관이 요구하는 BK21 플러스 사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 제공

※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

- 시간강의 허용
  - 학내·외, 주·야 불문 학기당 6학점 이내
  - 6학점 이내의 강의는 사이버 강의, 평생교원 강의를 포함하며,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
- 학위과정 수료자
  - 학위과정 수료자는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자격 부여

◎ 참고자료

【BK21 플러스 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 등】

① BK21 플러스 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비 참여 대학원생의 유형	
		내용	조치사항
소속	•사업단 소속 학과 내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휴학생 :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제적생 :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매년 4/1, 10/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연구생 등록 포함) 해야 함 •사업 중간에 휴학, 제적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
연한	•석사 : 입학 후 2년 (4학기) •박사 : 입학 후 4년 (8학기) •석·박사 통합과정 : 입학 후 6년	•석사 : 입학 후 2년(4학기) 초과 •박사 : 입학 후 4년(8학기) 초과 •통합 : 입학 후 6년 이상 (단, 기간 산정시 휴학 및 군 복무 등의 기간 제외)	•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지급된 연구장학금 전액 환수 •매년 4/1, 10/1 기준 참여 학생 수 조정 또는 대체
전일제	•4대보험 미가입자 •주 40시간 이상 사업단(팀)의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사업기간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된 비전일제인 경우(다만, 지침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며 사업단이 소명을 한 대학원생은 예외로 함)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

② BK21 플러스 사업 관련 비전일제 학생 기준

구분	비전일제 기준	조치사항
자격증/명의대여	매년 4/1, 10/1 기준 자격증/명의 대여	•자격증/명의대여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자격증/명의대여자로 판명된 경우 자격증/명의대여 상태에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 가능
고등교육법상 (행정) 조교	매년 4/1, 10/1 기준 4대보험이 가입된 (행정)조교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 신분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로 판명된 경우 조교 신분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 가능
시간강사	매년 4/1, 10/1 기준 학기당 6학점 **초과**의 시간강사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4대보험 가입자는 참여대학원생 불인정 •매년 2번의 기준일에 학기당 6학점 초과의 시간강의자로 판명된 경우 시간강사 기간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 가능
타 프로젝트 참여	사업단의 장 승인 없는 참여	•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당해 회사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벤처기업, 연구실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에 대해서는 사업단의 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전일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③ 기타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

1 휴학 및 군복무 외에 유학기간 중 등록기간을 재학기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요지
  - 유학기간 중 미등록시 제적 처리되는 당해 대학의 학칙 때문에 유학기간 중 연구등록 되어 연한 초과된 경우 이 기간을 예외적으로 휴학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
- 답변
  - 재학기간의 산정은 학적부상 등록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용 곤란

2 기타 비전일제

- 휴직 : 유급휴직인 경우 사업 참여 불가
- 군위탁생
  - 비전일제인 경우는 사업 참여 불가, 전일제인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만 인정
- 인턴사원
  - 대학 학점취득 규정상 연구등록 후 인턴과정에 대한 학점 취득이 가능한 경우 외에는 사업 참여 불가

<사례> 학칙에 언급된 인턴수업으로서 인텔코리아(주)에서 1학기 동안 인턴사원으로 근무함에 따라 학점 인정

- 산학협동과정생
  - 임직원 재교육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삼성SDI, LG필립스 등의 기업체와 공동으로 개설한 석·박사과정의 비전일제 학생인 산학협동과정생은 사업 참여 불가
- 해외체류
  - 매년 2번(4/1, 10/1) 점검일을 기준으로 해외과정 수행, 교환학생으로서의 학점 교류 등으로 인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사업 참여 불가
  - 참여대학원생은 당해 대학원에서 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수업에 전념하여야 하므로 해외 체류자를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없음
  - 학적상 연한초과 또는 휴학생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사업 참여의 부적격자로 인정

<사례> 1. 외국연구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공동연구에 참여하여 해외대학의 joint degree(공동학위과정) 수행 중인 박사과정생
2. 소속대학의 협력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서 연구 수행

  - 참여대학원생 신분으로 장·단기 연수자로 선발됨에 따라, 기준일 당시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으며 해외체류하는 경우와는 관련 없음

④ 외국인 참여대학원생 관련

❍ 외국인 대학원생이 사업단 내에서 연구과제 참여, 학술문헌 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할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하면 사업단(팀)장의 판단 하에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연구장학금 또한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관련근거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11조(참여대학원생) ⑨ 사업단의 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사업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지원대학원생

제13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다만,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의 과학기술 분야의 사업단, 글로벌인재양성 사업단,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의 과학기술 분야 및 과학기술 기반 융복합 사업단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60만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이상

③ 사업단의 장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에 구축된 DB시스템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 사업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 수준의 경쟁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정취지

- 참여대학원생 중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사업단(팀)에서 자체적으로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하도록 규정

◎ 참고자료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의 범위】

❍ 목적 : BK21 플러스 사업 추진 중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명확한 범위 공지

❍ 대상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글로벌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 관련 자료

공고문('15.5.)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① 과학기술분야(융복합 분야 포함) :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를 기준으로 사업비 산정

○ 사업단

-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
-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선발

○ 사업팀

-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
- 지원대학원생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대학원생 중 선발

② 인문사회분야(디자인·영상/융복합 분야 포함) : 사업 참여교수 1인당 석사과정생 2명, 박사과정생 1명 범위 내에서 실제 참여대학원생 수를 기준으로 사업비 산정

-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
- 지원대학원생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대학원생 중 선발

<글로벌인재양성형>

○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

○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선발

※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를 기준으로 사업비 산정

<특화전문인재양성형>

① 과학기술분야 :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를 기준으로 사업비 산정

○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

○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선발

② 인문사회분야 : 사업 참여교수 1인당 석사과정생 2명, 박사과정생 1명 범위 내에서 실제 참여대학원생 수를 기준으로 사업비 산정

○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교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

○ 지원대학원생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대학원생 중 선발

5. 신진연구인력

제14조(신진연구인력) ①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박사후과정생(또는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박사후과정생(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학의 장은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디자인·영상 및 예체능 분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학의 장은 계약교수에게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 제정취지

-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명시한 신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을 통해 신진연구인력 활용도를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제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

○ 자교·타교 출신 비율 제한

- 출신교에 대한 비율을 한정함에 따라 기 검증된 자교 출신의 우수인력 채용 기회가 줄어들고 검증되지 않은 타교 출신의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사업단(팀)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가 있었음
- 하지만 대학들의 특정대학, 자교 출신 선호로 인한 불균형적 채용 관행을 개선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자교 출신자 비율 2/3 이내 제한 유지
- 단, 사업단(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교 출신의 우수인력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해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않도록 함

❍ 해설

○ 신진연구인력 자격 요건

1 박사후과정생(리서치펠로우 포함)

-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2/3 이내로 제한

※ 단,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않음

2 계약교수

-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2/3 이내로 제한
-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는 2/3 이내로 제한

※ 단,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않음

3 기타

- 이중소속(타 대학 및 기관소속 휴직 및 연구년 중인 자 포함) 및 대학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제한
- 외부 시간강의 허용
  - 박사후과정생은 학내·외, 주·야를 불문 학기당 6학점 이내, 계약교수는 교외 주·야를 불문 학기당 6학점 이내
  - 6학점 이내의 강의는 사이버강의, 평생교원 강의를 포함하여,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

6. 산학협력 전담인력

제14조의2(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산업체 운영 등 교육·실습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 제정취지

- 사업단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지원 및 채용 기준 마련

○ 해설

1 산학협력 전담인력 자격 요건

-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2/3 이내로 제한
-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는 2/3 이내로 제한

※ 단,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않음

❷ 기타

- 이중소속(타 대학 및 기관소속 휴직 및 연구년 중인 자 포함) 및 대학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제한
- 외부 시간강의 허용
  -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주·야를 불문 학기당 6학점 이내 교외 시간강의 가능
  - 6학점 이내의 강의는 사이버강의, 평생교원 강의를 포함하여, 산업체 운영 등 교육·실습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는 제외

7. 사업단(팀) 자체 운영규정

제15조(사업단 자체 운영규정) ① 사업단의 장은 원활한 사업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사업단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3.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4.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5.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디자인.영상분야의 경우 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대학의 장은 사업단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단 공통의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정취지

- 사업목표에 따라 사업단(팀)별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사업 운영방식, 사업비 집행 기준 등을 설정

❍ 해설

○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 참여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적정한 경쟁체제(학술실적 등을 반영)를 통해 선발

○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 분야별 최소 참여 교수 수를 준수하고 참여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우선 선정 기준 등을 명시
- 휴직, 연구년, 장기해외 출장 또는 참여제한 조치 내의 교수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체 교수 선발 기준, 순서 등을 작성
-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참여대학원생 변경 처리

○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적 경비 운영 규정

-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가 있거나 사업단(팀) 운영에 기여하는 자에 대한 성과급 지원
- 참여교수 간 각종 경쟁을 유도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1인당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

○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채용 및 관리 규정

-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채용 자격, 채용 절차, 계약기간, 계약금액
-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직무 및 시간강의
-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채용을 위한 계약서 서식 등을 포함

○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 장·단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 경비 등

❶ 장기 해외연수

- 내용 : 우수대학 저명 교수의 지도, 우수연구기관·대학·산학협력기관에서의 연수, 공동연구, 인턴쉽 등
- 대상자 선발 기준, 대상 기관 선정, 사업비 지원방식 등 포함

❷ 단기 해외연수

- 내용 : 국제학술대회 참가, 단기간(15일 이내)의 국제공동세미나·워크샵 등 국제회의 참석, 단기 방문연구 등
- 대상자 선발 기준, 대상 기관 선정, 사업비 지원방식 등 포함

❸ 해외학자 초빙

- 내용 : 벤치마킹 대학 등의 우수 교수 초빙, 단기 집중 학생 지도 또는 공동연구를 위한 교수, 연구원 초빙
- 초빙기간, 초빙목적, 초빙 효과 등 포함

Ⅳ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1. 수시점검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16조(수시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사업비 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직접 면담을 하거나,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생, 리서치펠로우, 계약교수).산학협력 전담인력 및 해외학자의 근무 장소를 방문하는 등 사업수행 현장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자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
2. 경미한 사유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사례가 3회 이상 반복 지적(전문기관 이외에 타 감사기관 지적 사항 포함)
3. 제28조에 따른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③ 경미한 부당집행 및 규정위반 건이라 하더라도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쳐 유사 사례가 나타나는 등 별도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감액은 부당집행금액의 200% 이내로 한다.

제17조(개선 및 보완조치 요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 실시한 결과에 따라 사업단의 장에게 사업비의 한시적 집행 정지 등을 포함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단의 장이 보고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각종 평가 및 사업비 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정취지

- BK21 플러스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 대한 세부 실태 조사 실시 근거 규정 마련

❍ 해설

○ 수시점검

1 상시 모니터링

- 사업비 집행 및 행·재정 조치 사항 현장 확인
- 행정직원 또는 사업단(팀) 구성원 대상 사업운영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컨설팅 실시

❷ 민원제기

- 사업비 집행 전반의 각종 민원제기에 관한 현장조사 실시

○ 개선 및 보완 조치

- 전문기관의 장은 규정·지침 위반 등을 근거로 사안에 따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
- 대학 및 사업단(팀)은 지적사항에 대한 대학 및 사업단(팀)의 조치 방안 및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
- 점검결과를 각종 평가 및 사업비 조정시 반영 가능

○ 규정위반 사업단 처리기준

구분		조치기준
장학금 공동 관리	공통기준	‣ 공동 관리로 확인된 연구장학금 대상금액 전액 환수(단, 제보자 등 피해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피해 학생에게 피해금액 지급하도록 조치 가능) ‣ 사안이 중대.명백하여 협약 해지할 경우 ⇒ 공동 관리된 연구장학금 환수 외에 사업비 잔액도 환수하고,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 총괄위원회 심의 후 당해 기 집행 사업비도 환수 가능
	협약해지/계속지원, 참여제한* 등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제재	① 사업단(팀)장 연구실에서 발생된 경우 ‣ 사업단 협약해지 ‣ 해당 사업단(팀)장 참여제한 조치 ② 참여교수 1인의 연구실에서 발생된 경우 ‣ 관련 교수 사업단(팀) 배제, 참여제한 조치 및 사업단(팀) 사업비 삭감(10%) * 조치시점의 해당년도부터 매년 사업비 10% 삭감 ③ 참여교수 2명 이상의 연구실에서 발생하거나, 동일 사업단(팀)에서 연구장학금 부적정 관리 재발 시 ‣ 사업단(팀) 협약해지 및 관련 교수 참여제한 조치
전임발령 누락의 고의성이 있거나 시정기한 내 관련 조치를 못한 경우		- 전임발령이 누락된 참여교수가 기집행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되, 필요 시 사업비 삭감 제재 ※ 학생이 받은 연구 장학금을 제외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되,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위 심의를 거쳐 연구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안이 중대.명백하여 협약 해지할 경우 ⇒ 위에 제시된 사업비 환수 외에 사업비 잔액도 환수하고,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 총괄위원회 심의 후 당해 기 집행 사업비도 환수 가능
사업수행 중 참여제한자의 사업 참여가 확인된 경우 (해당교수 교체지연)		- 참여제한자가 참여제한 기간 중 기 집행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되, 필요 시 사업비 삭감 제재 ※ 학생이 받은 연구 장학금을 제외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되,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위 심의를 거쳐 연구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안이 중대.명백하여 협약 해지할 경우 ⇒ 위에 제시된 사업비 환수 외에 사업비 잔액도 환수하고,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 총괄위원회 심의 후 당해 기 집행 사업비도 환수 가능
기타 규정위반 사항		- 규정위반과 관련되거나 목적 외 기 집행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하되, 필요 시 사업비 삭감 제재 ※ 학생이 받은 연구 장학금을 제외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되,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위 심의를 거쳐 연구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사안이 중대.명백하여 협약 해지할 경우 ⇒ 위에 제시된 사업비 환수 외에 사업비 잔액도 환수하고,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 총괄위원회 심의 후 당해 기 집행 사업비도 환수 가능

○ 주의/경고 사업단(팀) 관리기준

구분	부여 기준 (총괄위원회 심의로 결정)	누적 관리기준 및 제재 기준
주의	• 규정위반 등 사유가 경미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업단(팀)에 경각심 부여가 필요한 건	• 주의 2회 : 경고 1회
경고	• 규정위반 등 사유가 중대하나 향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 경고 2회 : 사업비 삭감 10% • 경고 3회 : 협약해지
운영방법	• 소멸 시효 : 주의 6개월, 경고 1년 • 사업비 삭감 : 사업비 삭감 결정이 확정된 당해부터 계속 적용	

V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제39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기준일을 준수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전문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해외학자 현황(성명, 성별, 소속학교 및 학과, 연구자번호, 참여기간 등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인적사항 포함)
2.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연구실적
3.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취업 현황
4. 산학간 인적.물적 교류 실적
5. 사업단별 사업비 지원 및 집행 내역 등 사업비 집행 현황
6. 사업비집행계획서, 사업단 자체평가보고서, 연차.중간.최종보고서 등
7. 사업성과 및 홍보 자료
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 장관은 지침 제39조에 따라 입력된 정보는 외부기관 제출용, 각종 평가 및 수시점검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정취지

- 대학 및 사업단(팀)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에 대한 의무 규정

❍ 해설

○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목표 및 활용

- 종합관리시스템을 사업단(팀) 현황, 각종 평가 및 수시점검 기초 자료 제출 창구로 이용하여 사업관리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사업비 집행 내역을 공개적으로 입력하여 수시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회계 관련 자료 관리, 인건비 유용 방지 등 건전한 회계 절차 마련
- 평가 관련 자료의 검증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Ⅵ 행정사항 및 보칙

1. 행정사항

제41조(보고사항) 사업단의 장은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 시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참여 인력 현황 :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해외학자, 참여교수 등의 명단 및 관련 정보
2. 사업단명 변경
3.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실적
4. 각종 사업단의 실적 및 성과 등

제42조(승인사항)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받아야 한다.

1. 사업단의 장 변경
2. 참여교수 교체
3. 사업운영과 관련된 협약 내용의 변경 등

❍ 제정취지

- BK21 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수행 중의 각종 보고 및 승인 사항 처리 규정 마련

❍ 해설

○ BK21 플러스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관리·지원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인재양성진흥팀)’ 소관 사항

- 사업단(팀)장 변경 승인
- 참여교수 교체 승인
-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 조정 승인
- 사업목표 등에 대한 협약 내용 변경 승인 등
- 사업단(팀) 운영 및 사업 참여 인력 현황 파악
-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실적 파악
- 사업단(팀)의 각종 실적 및 성과 파악

○ 대학 및 사업단(팀)은 각종 보고 및 승인 요청 등의 의무를 지니며 BK21 플러스 사업 운영지침 미 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대학 및 사업단(팀)의 책임

○ 특히 보고사항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사항으로 대체하여 사업관리의 간소화 추구

2. 정보의 공개

제43조(정보의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대학 및 사업단의 현황, 사업계획서, 운영 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홈페이지 운영) ① 사업단의 장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정보공개,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홈페이지 운영 상황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5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 제정취지

○ 사업단(팀)별 BK21 플러스 사업 운영현황 및 실적 등을 외부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 및 규정·지침 외의 여러 논재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에 대한 해석 기준 마련

○ 정보공개를 통하여 사업단(팀)의 전문적 영역 홍보, 사업단(팀) 운영의 투명성 확보

❍ 해설

1 사업단(팀)의 성과관리,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외부적으로 정보 공개

○ 홈페이지 구성 내용

- 사업단(팀)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집행 상황, 사업실적 및 성과,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게재
- 사업단(팀)에서 산출된 연구실적 등 모든 실적 및 성과

※ 단, 지적 재산권 문제가 있는 연구실적은 목록만 등재

2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관리운영지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결정 및 해석에 따름

Ⅶ 부 칙

1. 부칙

부칙(2014.2.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 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 이후 협약체결되는 사업단의 참여교수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7.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 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정취지
- BK21 플러스 사업 운영지침의 시행기일, 구 지침·FAQ 등의 폐지 등을 정함

❍ 해설
○ 기 공지된 BK21 플러스 사업 운영규정, 사업비 집행 관리 요령 및 기본 회계 관리 규정, 공고문, FAQ 등에 명백히 언급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재정 조치 가능
○ 운영지침 시행일 이전 수행된 사업운영방식,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위 사항의 규정 등에 별도 기준이 없는 한, 이 지침에 따라 운영·집행된 것으로 간주
○ 운영지침에도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BK21 플러스 사업 운영지침 제45조에 따라 BK21 플러스 사업 운영규정, 기존 사업비 집행 관리 요령, 공고문, FAQ, Q&A 등을 참고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결정하고 해설할 수 있음

2. 홈페이지 운영

○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단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업단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대학 원생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

3. 보고의무

○ 사업단장 및 대학의 장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단의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단의 실적·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함

4. 기타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름

5. 유효기간

○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2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짐

부록 [관련 규정]

1.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109
2.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131
3.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151

교육부 훈령 제171호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2016.4. 25. 교육부훈령 제17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학술진흥법』 제7조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진되는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단"이라 함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형의 사업단위를 말한다.
2. "사업팀"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형의 사업단위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구분) ① 사업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평가·지원할 때에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2. 글로벌인재양성사업
3.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유형별 지원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기간 등) ① 사업은 7년간 추진하고, 그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말까지로 한다.

② 사업연도는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점검의 시기를 고려하여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③ 장관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협약기간을 제2항에 따른 사업연도와 다르게 소급해서 정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장관은 사업의 추진 방향, 사업 예산, 사업 내용,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 연도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도 사업개시일 전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관은 대학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직접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관이 직접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 내용
2. 사업단(사업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연차점검・중간평가・종합평가 기준 및 절차와 일정
3. 신규 사업단 선정 계획
4.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

제 2 장 사업 운영 체계

제6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장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제7조에 따른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3. 제8조에 따른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지원
4. 사업단 수시 점검, 선정평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사업성과 등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7. 사업성과의 활용 및 사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 평가·관리·지원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9.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실시 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훈령 및 교육부 지침의 범위에서 지침 및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주요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 제5항에 따른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⑦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계자의 설명 및 의견제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업관리 전담조직) ①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경비의 계상 및 집행 기준은 별표 5를 따른다.

제8조(사업총괄관리위원회) ① 장관은 사업의 평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사업총괄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BK21플러스 기본계획 심의
2. 선정평가, 수시 점검,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에 관한 심의
3. 그 밖에 사업의 평가・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③ 장관은 사업총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총괄관리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사업수행 주체) ①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 및 연간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연구과제 책임자는 사업단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④ 사업단의 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단의 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또는 협약체결 시에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을 따라야 한다.

⑥ 대학의 장과 사업단의 장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해당 사업의 목적 및 성과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신규 사업단의 선정

제10조(사업공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규 사업단 선정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내용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기한
3. 선정기준 및 절차, 일정

제11조(사업의 신청) 제10조에 따른 신규 사업단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단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선정평가 및 사업단의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단에 대하여 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신규 사업단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과 선정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평가결과가 정책 추진 방향과 배치되거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4 장 협약의 체결 및 변경 등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장관은 신규로 선정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협약 사업기간 및 협약 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협약서는 별표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 협약을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⑤ 사업단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별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해당 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수행 상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사업단이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의 명의로 된 변경 사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이 제2항에 따라 협약 변경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 학사조직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5조(협약의 해지)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학 및 사업단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주요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업단이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3.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사업단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중대하게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및 사업단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단의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대학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 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승인받은 후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지된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에게 협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와 지원받은 사업비(이자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신진연구인력 및 행정직원 퇴직금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반납 받을 수 있다.

⑨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반납 받은 사업비를 다른 사업단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 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6조(수시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점검 결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단에 개선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 수행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단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켰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자체평가) ① 사업단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소속 사업단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의 장은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차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점검을 실시한다.

② 연차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사업단은 제2항에 따른 연차점검 계획을 토대로 연차점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중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원 질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2015년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행 전년도말까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존 사업단과 신규 진입 사업단의 전면 재평가를 통해

2016년 지원 사업단을 재선정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이후 제출된 보고서에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등 부정이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해지,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단과의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사업단을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종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 7년간의 사업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후속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단은 7년간의 사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제기) ①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장은 제12조 및 제18조부터 제19조에 따른 선정평가·연차점검·중간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연차점검 및 중간평가·종합평가의 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 사업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 및 성과를 낸 사업단과 그 구성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자료 등의 요청)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를 추진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단에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단의 장 등의 출석 요구
3.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업단의 구성 및 관리

제24조(참여교수)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임교원(이하 "교수"라 한다)로 하며, 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겸임교수도 인정한다. 또한 참여교수의 소속이 학부와 대학원 동일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이 다를 경우 대학원 전임발령을 내야 한다. 그 외에 참여교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교수 중 해당 기간 동안 학생지도(논문지도 등)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1. 휴직, 국내외 기관 파견 중인 교수(다만,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인 교수는 본문의 단서에 따른다.)
2. 연구년 또는 안식년 중이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출장 중에 있는 교수
3. 제24조의 2에 따른 연구 참여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교수

③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업공고 시 공고한 사업 참여 요건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수 있다.

④ 대학 및 사업단이 제3항에 따라 참여교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참여교수 변경에 따른 연구업적 목록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교수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참여교수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의2(참여제한자)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장이 연구윤리 위반, 협약 위반 등의 사유로 과학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등에 특정 기간 동안 참여가 제한된 연구자(이하 참여제한자라 한다)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신청 시 : 해당 사업단의 사업 참여 제한
2. 제12조에 따른 선정평가 및 사업단 선정 시 : 사업단 탈락
3. 사업단 선정 이후 사업 관리·운영 : 사업단의 장을 교체하고 사업비 삭감 등 제재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참여교수가 참여제한자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신청 시 : 해당 참여 교수의 사업 참여 제한
2. 제12조에 따른 선정평가 및 사업단 선정 시 : 해당 교수를 사업단에서 배제
3. 사업단 선정 이후 사업 관리·운영 : 해당 교수를 교체하고 사업비 삭감 등 제재

제25조(참여대학원생 등)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로 등록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②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③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해당 대학원에서 매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또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사업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60만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이상

⑤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대학원생 사이에서 적정 수준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연구장학금 지급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매주 40시간 이상의 연구 또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⑦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대학원생의 참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이『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대학원생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신진연구인력) ①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연구력 증진을 위하여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신진연구인력의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주체는 대학의 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④ 제1항에 따른 박사후과정생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교수의 채용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디자인·영상 및 예체능 분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교수에게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제2호의 사업비 지원을 받는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⑦ 대학의 장은 신진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⑧ 신진연구인력은 사업단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⑨ 신진연구인력의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연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신진연구인력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의2(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목적 달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연봉제 계약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비 지원을 받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자격기준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해외학자) ①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④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사업단에서는 반드시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학자를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사업단의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 실적을 제18조부터 제20조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8조(사업비) ① 사업비의 지출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과 집행 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인건비(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3. 국제화경비
4. 사업단 운영비
5. 교육과정 개발비
6. 실험실습지원 및 산학협력활동비
7. 간접비

② 대학은 각 사업단별 사업비의 2% 범위에서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점검 또는 평가의 결과와 사업단의 대학원생 현황 등을 반영하여 사업단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정부의 재정사정을 고려하고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 세부 집행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9조(사업단의 회계 및 계정) ①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③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 회계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① 대학의 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사업비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이 훈령의 범위에서 대학자체 규정 또는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도별 예산편성 및 사업운영계획 등의 작성 기준을 별도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비의 집행) ① 사업비는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거나 관리할 수 없다.
② 사업비는 토지 및 건물매입, 시설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업비는 사업단 또는 산학협력단의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 사업비는 매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이월한도를 정하거나, 이월 현황을 차기년도 국고 지원 시 반영하여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사업의 평가·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행하는 경비의 집행 후 잔액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3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해당 사업단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자 발생 내역 등을 사업단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34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시 이자발생 내역 및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통해 사업단의 연구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산업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 그 밖의 기술료 등은 관계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할 수 있다.

제34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35조(지침의 제정)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홈페이지 운영)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단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업단 현황, 사업 참여자, 사업계획서, 사업진행 상황, 사업 실적 및 성과,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실적 및 성과의 관리) ① 사업단에서 산출된 연구실적 등 모든 실적과 성과는 제36조에 따른 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는 연구실적에 대하여는 목록만 게재할 수 있다.

② 사업 참여자(교수,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해외학자를 말한다)는 자신이 참여하여 산출된 연구실적에 'BK21 플러스사업'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제38조(보고의무)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단의 현황,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단의 실적·성과 등 필요한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2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및 제24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참여교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 시행 이전에 파견중인 참여교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사업유형별 지원 분야

유형	지원분야	
1.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사업	기초과학 분야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응용과학 분야	정보기술(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등)/기계/응용생명(약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응용생명공학 등)/건설/화공/재료/기초의·치의·한의학, 기타 중점분야
	인문사회 분야	인문사회 전 분야
	사업팀	기초과학/응용과학/인문사회/융복합 전 분야
2.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융합형 R&D 분야	
3.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 과학기술/인문사회/예술 전 분야 - 디자인(산업, 시각, 패션 등),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관광, 건강, 정보보호 등 특화 분야	

【별표 2】 BK21 플러스 사업 협약서식

BK21 플러스 사업 협약서

○ 사업명(유형명) : BK21 플러스 사업 (0000000형)

○ 대학명 : ○○대학교

○ 사업단(팀)명 :

○ 사업기간 :

- 총 사업기간 : ~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총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연도 협약기간 : ~

○ 당해연도 사업비 : 천 원(연간)

○ 협약 당사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학교 총장

○ 협약 당사자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학교 총장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사업단(또는 사업팀)장

- 소속 : 직급(위) : 성명 :

위 BK21 플러스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계획) BK21 플러스 사업 선정과 관련한 공고에 따라 대학이 제출한 별첨 1의『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함)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매년도 O월 O일부터 다음연도 O월 말일까지로 한다.

① 협약기간은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협약기간은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 협약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제외한 기존 협약사항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사업연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의 수행)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대학교 총장이 대표하는 산학협력단에 매년 정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한다. 사업비 규모와 지급시기 및 방식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권한과 책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학교 총장,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훈령'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제6조 (지원 조건)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공고 및 훈령 등에서 정한 사업신청 적격 요건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정한 지원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목표)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신청 시 자율적으로 제출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역량 부문 :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취업률, 대학원생 연구활동 등

2. 연구역량 부문 : 연구비 수주, 논문 게재 및 기술이전(인문사회분야의 경우 저서 및 창작물 등 포함)연구재단 등재지 등

제7조 (사업비의 관리)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정한 지침·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의 변경)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훈령' 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의 해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대학교 총장, 산학협력단장, 또는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이 주요협약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 (제출 및 보고의 의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사업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업단장 등의 출석요구,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신청서 등의 공개) ○○대학교 총장과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은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를 '훈령' 및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석) 본 협약 및 '훈령' 등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3년 월 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인)

○○대학교 총장 (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사업단(또는 사업팀)장

- 소속 : 직급(위) : 성명 :

별첨 1. 예산운영계획서

2. 사업신청서

※ 주관대학의 총장을 대신하여 산학협력단장이 날인할 수 있으며, 본 협약서의 직인날인은 공인인증서 서명으로 대체되었음

【별표 3】 BK21플러스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table>
<tr><th colspan="2" rowspan="2">항목</th><th colspan="3">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th><th rowspan="2">글로벌
인재양성사업</th><th rowspan="2">특화전문
인재양성사업</th><th rowspan="2">사업비 편성내용</th></tr>
<tr><th>기초과학/
응용과학</th><th>인문사회</th><th>사업팀</th></tr>
<tr><td rowspan="8">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td><td>1.대학원생 연구장학금</td><td>60%이상
※의·치·한의학 분야 50%이상</td><td>50%이상</td><td>50%이상</td><td>40%이상</td><td>50%이상</td><td>• 석 ·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
- 석사과정 : 월 60만원 이상
- 박사과정 : 월 100만원 이상</td></tr>
<tr><td>2.신진연구 인력 인건비</td><td colspan="5" rowspan="5">비율제한 없음</td><td>• 월 250만원 이상</td></tr>
<tr><td>3.산학협력 전담인력 인건비</td><td></td></tr>
<tr><td>4.교육과정 개발비</td><td></td></tr>
<tr><td>5.실험실습 지원 및 산학협력 활동비</td><td></td></tr>
<tr><td>6.국제화 경비</td><td></td></tr>
<tr><td>7.사업단 운영비</td><td colspan="5">10%이내 또는 3,000만원 이내
※단, 위의 연구장학금 지급비율은 준수하여야 함</td><td></td></tr>
<tr><td>8.간접비</td><td colspan="5">2%이내</td><td></td></tr>
</table>

1) 인건비(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월 지급액 기준은 퇴직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임(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인건비 내에서 편성 및 지급 가능)
2)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는 전임교원 인건비로는 지급 불가
3)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은 반드시 해외학자를 초빙 · 활용하여야 함
4)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비의 30%(글로벌 인재양성형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화 경비 등 사업비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미지원)
   - 글로벌인재양성사업 : 지원사업비 중 사업단 운영비 15% 이내, 간접비 2% 이내로 편성·집행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 지원사업비 중 사업단 운영비 25% 이내, 간접비 2% 이내로 편성·집행

【별표 4】 BK21플러스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구 분		집행 기준	비 고
1.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석사과정생 월 60만원 이상 • 박사과정생 월 100만원 이상	-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대학 및 사업단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2.신진연구인력 인건비		• 월 250만원 이상	-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퇴직금 및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한 액수임 - 리서치펠로우에 대한 인건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집행 가능(최소기준 미적용)
3.산학협력전담 인력 인건비		• 주관대학 지급기준에 따름	- 전임교원 인건비로는 지급 불가
4. 교육과정 개발비		• 교재개발비 • 사례조사비 및 실험비 등	- 교육과정 개발 관련제반 경비를 편성·집행
5.실험실습 지원 및 산학 협력활동비		• 소모성 재료비 • 창업,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 경비	- 기자재 및 장비 구매비 집행 불가
6.국제화경비		•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장·단기 해외 연수 경비 •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회의 참가비용 • 해외특허 출원(등록)비	- 참석 여부 및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기 해외연수 지양 - 해외학자 초빙·활용경비는 해외학자의 국내 실 체류기간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하며, 주관대학의 전문가 활용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체재비 및 항공료 등 지원
7.사업단 운영비	○인건비	- BK21플러스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단 소속직원 인건비	- 퇴직금 포함
	○성과급	-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하여 지급) -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정기적 지급 등)
	○국내 여비	- 사업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	- 해당 대학 여비규정 준용(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 해외 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국외 여비 등은 국제협력 경비에서 집행
	○학술 활동 지원비	- 논문 게재료 - 국내 학회, 세미나 참가비 - 전문가 초청 자문료·원고료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 국내·외 정보 수집비 등	-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제한 - 참여 교수에 대한 정책 연구비, 교재 개발비,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제한
	○산업 재산권 출원 등록비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
	○회의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식대 등	- 사업참여교수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 -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
	○기타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단에서 적정한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8. 간접비		•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 간접비의 편성 비율은 연간 사업비 총액의 2%를 넘을 수 없음

【별표 5】 BK21플러스 평가관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구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1. 내부인건비 - BK21 플러스사업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한국연구재단 내부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근무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100퍼센트 초과 불가)에 따라"연봉총액×참여율"로 계상 2. 외부인건비 - BK21 플러스사업 업무를 지원하는 계약직, 일용직 등에 대한 인건비로 연구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해당과제 참여율(100퍼센트 초과 불가)에 따라 계상
	연구장비・재료비	1. 기기장비 - 사업관리에 2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컴퓨터 및 S/W 포함)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2. 재료 및 전산 처리・관리비 - 전산처리 및 관리비(전산소모품 포함) - 사업관리 시스템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 경비 등
	연구활동비	1. 국외업무여비 - 여비규칙에 의한 사업 관련 인력의 업무수행 경비(업무 수행 및 지원, 계약체결, 특정업무 수행, 국제회의・행사 참석 등) 2. 인쇄 및 유인비 - 사업관리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3. 우편료 : 사업 관련 우편 발송료 등 4.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평가비 ・ 사업 관련 사항 심의를 위해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개최시 지급되는 수당 ・ 각종 사업 계획서 및 보고서 평가자에게 지급하는 평가 수당 - 전문가활용비 ・ 고문, 회계사 등에게 지급하는 수임료 및 보수 ・ 속기, 원고, 교정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과제 업무의 자문(법률자문 등 포함)에 대한 자문료 및 사례금 ・ 사업 관련 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시험수당 등 5. 사업 관련 각종 회의장 사용료 6. 사업 참여인력의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교육훈련비 7.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팜플렛 등 정기, 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사업과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내부 직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집행
	연구과제 추진비	1. 국내여비 - 여비규칙에 의한 국내출장 여비 2. 소모성경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사업 추진 등을 위한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물품 제작비 4. 회의 및 행사개최비 - 사업 평가, 컨설팅, 총괄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사업 관련 각종 회의 개최 경비 - 해당 회의 관련 식대 및 준비비, 제반 비용(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한다) 5. 특근매식비 - 사업 추진을 위한 특근자에 대한 매식비
	위탁연구개발비	- 사업관리 관련 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각종 정책연구비, 행사개최 대행비 등
간접비	간접비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비 등으로 구성 -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곱하여 계상

<한국연구재단(인재양성진흥팀)>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

2014. 2. 13 제정
2014. 12. 17 일부개정
2016. 7. 21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의 위임을 받아 BK21 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 및 사업단 또는 사업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별표1에 따른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 글로벌인재양성사업,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의 선정 사업단(사업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제3조(사업기간) ①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0년 3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참여대학의 의무

제4조(제도개혁) ①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장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2. 교수업적 평가제도

②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하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 확립) ①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 사회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 제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과목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정 여부, 교육과정에서의 연구윤리 과목 개설 등을 점검하여 각종 평가에서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전체 사업단을 대상으로 논문실적 및 결과물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 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윤리를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단에 대하여 사업비 조정, 사업 참여 배제, 해당 사업단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 외에도, 언론보도, 민원접수, 제보 등을 통해 BK21 플러스 사업단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대학원생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에 자체 점검을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 관련자에 대한 사업 참여 배제,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집행신고센터)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 수행과 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시스템으로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내부 신고센터를 갖추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대학의 의무사항) ① 대학의 장은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사업 수행에 대한 성과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
2. BK21 플러스 사업 관련 규정 및 협약 내용 등의 준수에 대한 책임
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결과 보고
4. 기타 전문기관 장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협조
5. 사업 신청 당시 제시한 사업단 지원 사항 이행

② 복수의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일부 교수 및 학생들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2014년도까지 단일의 대학원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상의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참여교수를 해당 학과 또는 협동과정에 전임으로 발령하여야 하고(협동과정의 경우에는 겸임발령도 허용한다.), 해당 학과 또는 협동과정 소속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 단일 학과 또는 단일 협동과정의 편제가 완성되기 전까지 운영된 학과 또는 협동과정의 참여대학원생은 2017년 2월까지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이 가능하다.

제 3 장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사업단의 장) ① 사업단의 장은 각 유형별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된다.

② 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그 밖에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 사업단의 장은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 참여 학사조직의 장을 겸할 것을 권장한다.

④ 대학 및 사업단은 휴직, 1년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관 파견, 연구년, 이직, 퇴직, 사망 등으로 인한 사업단의 장 변경 시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단의 장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⑤ 사업단의 장은 본 지침 제10조에 따른 참여교수 변경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1년 이내의 연구년 중인 교수 중 국내(6개월 이내의 국외) 연구수행으로 사업단의 장 직위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의 장 직위를 변경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사업단의 장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 직을 변경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의 장이 사망하여 변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계속한 해외 연구년 및 해외 연구 활동, 1년 이내의 파견 등으로 인해 사업단의 장이 부재 시에는 대학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단장을 변경하거나 참여교수 중 한명이 사업단의 장 대리체제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⑧ 사업단의 장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SRC, ERC, MRC, NCRC(GCRC 포함), ITRC, CRC 등) 및 연간 연구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의 연구책임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연구책임자의 직을 사임할 때는 예외로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라고 한다.)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해당 대학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全日制)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재임용 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거나, 재임용 횟수가 제한되었거나, 학과 학생 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

육원·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여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와 대학원과정의 학과가 동일한 소속이어야 하며, 동일한 소속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업 신청 당시의 대학원과정의 학과에 전임으로 발령받아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과간 협동과정(이하 협동과정이라 한다)으로 사업에 선정된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해당 협동과정에 겸임으로 발령받을 수 있다.

③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사업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사업단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사업단의 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단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지침 제9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사업단의 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단의 참여교수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지침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의 참여교수가 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전문대학원에 참여하여 학과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참여교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공동 지도교수인 경우, 사업단(팀) 학과 소속 공동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가능)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여대학원생이 휴학·취업·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 사업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⑦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⑧ 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⑨ 사업단의 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사업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⑩ 대학원생의 지도교수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도교수 전원이 사업 참여교수인 경우에 한하여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공동 지도교수 중 일부가 타 학과 소속인 경우는 해당 타 학과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도교수 전원의 사업 참여 조건을 적용한다.

제12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단의 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지침 제11조에 의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사업단의 장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제13조(지원대학원생) ①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BK21 플러스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다만,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의 과학기술 분야의 사업단, 글로벌인재양성 사업단,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의 과학기술 분야 및 과학기술 기반 융복합 사업단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에서 지원대학원생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60만원 이상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또는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 월 100만원 이상

③ 사업단의 장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기관에 구축된 DB시스템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 사업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함에 있어,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신진연구인력) ①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박사후과정생(또는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 및 계약교수(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해당 대학의 교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박사후과정생(리서치 펠로우를 포함한다)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은 소속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학의 장은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박사후과정생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과정생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③ 계약교수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교수의 채용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디자인·영상 및 예체능 분야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교수는 소속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학의 장은 계약교수에게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4.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계약교수가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교수는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④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박사후과정생 중 '리서치 펠로우'로 채용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최대 4년은 초과할 수 없다.

⑤ 신진연구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제14조의2(산학협력 전담인력) ①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 전담인력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교육·실습 지원 등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학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④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기간 중 소속 대학 외 일체의 이중 소속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래 각 호의 경우는 채용할 수 없다.

1. 대학(본·분교 포함)에서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전직 교원
2.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휴직자
3. 타 대학(본·분교 포함) 및 기관 소속 연구년 중인 자

⑤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실습 지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교외 강의(사이버 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산업체 운영 등 교육·실습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리행위는 제외한다.

제14조의3(해외학자) ① 사업단의 장 및 대학의 장은 사업단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③ 해외학자가 사업기간 중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외학자 초빙 대상에 포함할 수 없으며 해외학자 초빙 관련 지원 경비를 집행할 수 없다.

④ 글로벌인재양성사업 사업단에서는 반드시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해외학자를 활용하여야 하며, 활용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단 자체 운영규정) ① 사업단의 장은 원활한 사업단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사업단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2. 참여교수 선정 및 교체 기준
3.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평가기준 포함)
4.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활용 지침
5. 국제협력경비 관련 국제학술회의 발표(디자인·영상분야의 경우 국제 전시회 출품 포함)·장기해외연수 대상 대학원생 선발 기준 및 해외학자 초빙에 관한 지침
6.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대학의 장은 사업단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단 공통의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16조(수시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사업비 점검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과 직접 면담을 하거나, 신진연구인력(박사후과정생, 리서치펠로우, 계약교수)·산학협력 전담인력 및 해외학자의 근무 장소를 방문하는 등 사업수행 현장을 파악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자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
2. 경미한 사유로 인한 예산 부당집행사례가 3회 이상 반복 지적(전문기관 이외에 타 감사기관 지적 사항 포함)

3. 제28조에 따른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③ 경미한 부당집행 및 규정위반 건이라 하더라도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쳐 유사 사례가 나타나는 등 별도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차년도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으며, 부당집행에 따른 삭감액은 부당집행금액의 200% 이내로 한다.

제17조(개선 및 보완조치 요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 실시한 결과에 따라 사업단의 장에게 사업비의 한시적 집행 정지 등을 포함한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단의 장이 보고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각종 평가 및 사업비 조정 시 반영할 수 있다.

제18조(자체평가) ① 사업단의 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소속 사업단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사업단 운영 전반에 걸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의 장은 자체평가결과 부진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의 장은 제19조~제21조 규정에 의한 연차점검, 중간평가, 종합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연차점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한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연차점검을 실시한다.

② 연차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중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원 질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2015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시행 전년도말까지 중간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존 사업단과 신규 진입 사업단의 전면 재평가를 통해 2016년 지원 사업단을 재선정한다.

제21조(종합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 7년간의 사업 운영 성과 및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후속 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종합평가를 앞당겨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제기) ① 사업단의 장은 점검 및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점검 및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다. 다만, 협약해지 또는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는 30일 이내로 한다. 또한,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BK21 플러스 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 통해 그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

제23조(자료 등의 요청)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단의 장 등의 출석 요구
3. 사업단에 대한 현지방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학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24조(사업비 교부) 사업비는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의 산학협력단 계좌로 교부한다.

제25조(사업비 계정관리) 사업비는 반드시 중앙관리를 해야 하며 사업단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하되, 사업비의 비목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구분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① 사업비 집행에 관한 민원발생시 일차적으로 해당 대학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별도의 조사팀을 구성하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부당사용에 대하여 관련자 사업 참여 배제, 형사 고발, 행·재정 조치 등을 취하거나, 해당 대학에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사업비 지출항목) ① 사업비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결산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인건비(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

3. 국제화경비
4. 사업단운영비
5. 교육과정개발비
6.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7. 간접비

② 사업단(팀)의 장은 제1항의 간접비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별표3에 의해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의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BK21 플러스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으로 정한다.

③ 사업단(팀)의 사업비 항목별 편성 비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별표3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사업비는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사용할 수 있다.

제28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형태에 있어서 대학 및 사업단이 학기별, 월별, 분기별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단가는 석사 월 60만원, 박사 월 100만원을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 사업단 내 자체 규정을 통해 기준 단가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개인별 계좌 입금,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사업단(팀)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 및 참여교수는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인력은 별표5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단(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인건비) ① 사업비는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로 지출될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는 월 25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채용계약 시 급여, 법정 보험, 인센티브,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실제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지급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과정 개발비) BK21 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장비는 구매할 수 없다.

제31조(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BK21 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과 관련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장비는 구매할 수 없다.

제32조(국제화경비) ① 사업비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또는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국제학회 논문 발표 및 참가, 해외특허 출원(등록), 국제 전시회 출품(디자인·영상분야에 한함), 장·단기 해외연수, 해외학자 초빙, 국제(학술)대회 개최(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포함), 국제 공동 워크숍, 산학협력 우수 기관 방문 등의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디자인·영상 분야의 경우에는 전시회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업단의 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영상 분야의 경우에는 논문 대신 전시회 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2.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③ 사업 예산운영계획서에 명기된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숍은 년 1회에 한하여 경비 집행을 허용한다.

④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단, 권위있는 국제 전시회 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2.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4. 단순참가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총 3인 이내 가능

⑤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다.

⑥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서는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⑦ 30일 초과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화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 대학원생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33조(사업단 운영비) ① 사업비는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비 총액의 10% 또는 3,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단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별표3에 의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 운영비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된다.

③ 참여교수에 대한 월정액 보직 수당은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④ 사업단운영비는 사업단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효율적 사업추진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단 운영비에서 성과급적 경비를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교수 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4조(간접비) 대학은 각 사업단별 사업비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다.

제35조(사업비 예금이자) ①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해당 연도 사업기간의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운영비 및 간접비로의 산입은 불가능하며 사업비 예금이자 발생 및 사용내역은 연도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한다.

② 해당 연도 사업기간 내에 발생한 이자를 다음연도 사업기간에 집행할 때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제출시 사업비에 산입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제36조(사업비 이월) 예산의 효율적 진행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이월이 가능하며 이월 범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연도 사업비 배부 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다만, 1차년도에 한하여 이월 가능 범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사업비 집행 관리) ① 사업비의 집행에 대한 관리는 이 지침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BK21 플러스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따른다.

②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각종 인건비,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성과급 등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시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대학의 장은 사업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산학협력단)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증빙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산학협력단)은 사업비의 사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사용내용 및 회계감사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가 종료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비카드 발급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에게 전담카드사를 지정하여 연구비 카드를 발급·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사업비 청구 시 사업단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연구비카드 매수 및 유형을 정하여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전담 카드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 6 장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제39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기준일을 준수하여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전문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해외학자 현황(성명, 성별, 소속학교 및 학과, 연구자번호, 참여기간 등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인적사항 포함)
2.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연구실적
3.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취업 현황
4. 산학간 인적・물적 교류 실적
5. 사업단별 사업비 지원 및 집행 내역 등 사업비 집행 현황
6. 사업비집행계획서, 사업단 자체평가보고서, 연차・중간・최종보고서 등
7. 사업성과 및 홍보 자료
8.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 활용) 장관은 지침 제39조에 따라 입력된 정보는 외부기관 제출용, 각종 평가 및 수시점검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7 장 행정사항 및 부칙

제41조(보고사항) 사업단의 장은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 시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참여 인력 현황 :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해외학자, 참여교수 등의 명단 및 관련 정보
2. 사업단명 변경
3. 사업비 집행 현황 및 실적
4. 각종 사업단의 실적 및 성과 등

제42조(승인사항)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 받아야 한다.

1. 사업단의 장 변경
2. 참여교수 교체
3. 사업운영과 관련된 협약 내용의 변경 등

제43조(정보의 공개)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대학 및 사업단의 현황, 사업계획서, 운영실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홈페이지 운영) ① 사업단의 장은 본 지침을 참고하여 정보공개, 사업성과 관리 및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홈페이지 운영 상황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45조(기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14. 2.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 이후 협약체결되는 사업단의 참여교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7.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었거나, 집행되었던 사업운영 방법, 추진실적,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하여 운영·집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1】 사업유형별 지원 분야

<table>
<tr><th>유형</th><th colspan="4">지원 분야</th></tr>
<tr><td rowspan="10">1.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사업</td><td rowspan="9">사업단</td><td rowspan="2">기초과학
분야</td><td>자연과학</td><td>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td></tr>
<tr><td rowspan="4">응용과학
분야</td><td>공학</td><td>정보기술(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등)/
기계/건설/화공/재료/기타 중점분야</td></tr>
<tr><td>의약학</td><td>기초 의·치의·한의학, 응용생명(수의학)</td></tr>
<tr><td>농・생명・
수산・해양</td><td>응용생명
(약학, 농림수산학, 응용생명공학 등)</td></tr>
<tr><td>융복합</td><td>과학기술 기반의 융복합 전분야</td></tr>
<tr><td rowspan="4">인문사회
분야</td><td>인문학</td><td>인문학 전분야</td></tr>
<tr><td>사회과학</td><td>사회과학 전분야</td></tr>
<tr><td>융복합</td><td>인문사회 기반의 융복합 전분야</td></tr>
<tr><td>디자인・영상</td><td>디자인・영상 전분야</td></tr>
<tr><td colspan="3">사업팀</td><td>기초과학/응용과학/인문사회/융복합
전 분야</td></tr>
<tr><td>2. 글로벌인재양성사업</td><td colspan="4">융합형 R&D 분야</td></tr>
<tr><td>3.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td><td colspan="4">- 과학기술/인문사회/예술 전 분야
- 디자인(산업, 시각, 패션 등), 디지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관광, 건강, 정보보호 등 특화 분야</td></tr>
</table>

【별표2】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대학원생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비 참여 대학원생의 유형	
		내용	조치 사항
1) 소속	사업단 소속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 **휴학생 :**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 **제적생 :**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 ◦ 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 매년 4/1, 10/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연구생 등록 포함**)해야 함 ◦ 사업 중간에 휴학, 제적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2) 연한	입학 후 석사 2년, 입학 후 박사 4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 석사 : 입학 후 2년이상, ◦ 박사 : 입학 후 4년이상, ◦ 통합 : 입학 후 6년이상 ※ 단, 기간 산정시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 제외	◦ 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연구장학금 전액 환수 ◦ 매년 4/1, 10/1기준 참여학생 수 조정 또는 대체
3) 전일제	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간 이상 사업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 사업기간에 취업한 경우 ◦ 4대보험이 가입된 **비전일제**인 경우 (다만, 지침 제1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며 사업단이 소명을 한 대학원생은 예외로 한다.)	◦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참고) BK21 플러스 사업 관련 비전일제 학생 기준

구분	비전일제 기준	조치사항
자격증/명의 대여	매년 4/1, 10/1 기준 자격증/명의 대여	◦ 자격증/명의대여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 매년 2번의 기준일에 자격증/명의대여자로 판명된 경우 자격증/명의대여 상태에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 가능
고등교육법상 (행정) 조교	매년 4/1, 10/1 기준 4대보험이 가입된 (행정)조교	◦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 신분 학생은 참여대학원생으로 불인정 ◦ 매년 2번의 기준일에 4대보험이 가입된 조교로 판명된 경우 조교 신분 시 기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 가능
시간강사	매년 4/1, 10/1 기준 학기당 6학점 **초과**의 시간강사	◦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는 4대보험 가입자는 참여대학원생 불인정 ◦ 매년 2번의 기준일에 학기당 6학점 초과의 시간강의자로 판명된 경우 시간강사 기간 지급된 장학금 모두 환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 가능
타 프로젝트 참여	사업단의 장 승인 없는 참여	◦ 공동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당해 회사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 벤처기업, 연구실 등의 연구원으로 위촉된 학생에 대해서는 사업단의 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전일제 요건을 갖춘 경우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

【별표3】 BK21플러스 사업비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table>
<tr><th colspan="3" rowspan="2">항목</th><th colspan="3">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th><th rowspan="2">글로벌
인재양성사업</th><th rowspan="2">특화전문
인재양성사업</th><th rowspan="2">사업비 편성내용</th></tr>
<tr><th>기초과학/
응용과학</th><th>인문사회</th><th>사업팀</th></tr>
<tr><td rowspan="7">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 비율</td><td colspan="2">1.대학원생연구장학금</td><td>60%이상
※의·치·한의학 분야 50%이상</td><td>50%이상</td><td>50%이상</td><td>40%이상</td><td>50%이상</td><td>• 석 ·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연구장학금 지원
- 석사과정 : 월 60만원 이상
- 박사과정 : 월 100만원 이상</td></tr>
<tr><td rowspan="2">2 인건비</td><td>신진연구인력</td><td colspan="5" rowspan="5">비율제한 없음</td><td>• 월 250만원 이상</td></tr>
<tr><td>산학협력전담인력</td><td></td></tr>
<tr><td colspan="2">3.교육과정개발비</td><td></td></tr>
<tr><td colspan="2">4.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td><td></td></tr>
<tr><td colspan="2">5.국제화 경비</td><td></td></tr>
<tr><td colspan="2">6.사업단 운영비</td><td colspan="5">10% 이내 또는 3,000만원 이내</td><td>다만,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예산 편성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td></tr>
<tr><td colspan="2">7.간접비</td><td colspan="5">2%이내</td><td></td></tr>
</table>

1) 인건비(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월 지급액 기준은 퇴직금 및 4대보험 개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임(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인건비 내에서 편성 및 지급 가능)

2) 산학협력전담인력인건비는 전임교원 인건비로는 지급 불가

3)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은 반드시 해외학자를 초빙 · 활용하여야 함

4)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대학원생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비의 30%(글로벌인재양성형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화 경비 등 사업비 지원(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미지원)

- 글로벌인재양성사업 : 지원사업비 중 사업단 운영비 15% 이내, 간접비 2% 이내로 편성·집행
-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사업/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 : 지원사업비 중 사업단 운영비 25% 이내, 간접비 2% 이내로 편성·집행

【별표4】 BK21플러스 사업비 항목별 집행 기준

구 분		집행 기준	비 고
1.대학원생 연구장학금		• 석사과정생 월 60만원 이상 • 박사과정생 월 100만원 이상	-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대학 및 사업단별로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2 인건비	신진연구 인력	• 월 250만원 이상	-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준은 퇴직금 및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한 액수임 - 리서치펠로우에 대한 인건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집행 가능(최소기준 미적용)
	산학협력 전담인력	• 주관대학 지급기준에 따름	- 전임교원 인건비로는 지급 불가
3. 교육과정 개발비		• 교재개발비 • 사례조사비 및 실험비 등	- 교육과정 개발 관련제반 경비를 편성·집행
4.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 소모성 재료비 등 • 창업,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 경비	- 기자재 및 장비 구매비 집행 불가
5.국제화경비		• 국제학술회의 참가비용 •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의 장·단기 해외 연수 경비 • 해외학자 초빙 • 해외특허 출원(등록) 관련 비용 등	- 참석 여부 및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단기 해외연수 지양 - 해외학자 초빙·활용경비는 주관대학의 전문가 활용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체재비 및 항공료 등 지원(다만, 사업단의 사업 신청서에 따른 연차별 예산 운영계획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 기관과 온라인 강의 및 수강에 대한 관리주체 및 체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집행 가능)
6.사업단운영비	○인건비	- BK21플러스 사업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단 소속직원 인건비	- 퇴직금 포함
	○성과급	-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	- 자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되, **1인당 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평가를 통하여 지급) - 급여 성격의 성과급 활용 불가(정기적 지급 등)
	○국내 여비	- 사업 참여 인원의 국내 여비	- 해당 대학 여비규정 준용(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 해외 학술회의 참가 등에 필요한 국외 여비 등은 국제협력 경비에서 집행
	○학술 활동 지원비	- 논문 게재료 - 국내 학회, 세미나 참가비 - 전문가 초청 자문료·원고료 - 도서 등 문헌 구입비 - 국내·외 정보 수집비 등	- 학회 연회비 등 참여 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제한 - 참여 교수에 대한 정책 연구비, 교재 개발비, 자문료, 원고료 등의 지급 제한
	○산업 재산권 출원 등록비	- 국내 특허 출원·등록비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연구기자재 구입비 및 시설비, 상품권 등 선물 구입비 집행 제한
	○회의및 행사 개최비	- 회의비, 각종행사경비, 식대 등	- 사업참여교수 개인에게 수당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한 - 회의비 집행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 구비
	○기타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상기 비목으로 편성하기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사업단에서 적정한 집행 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	
7. 간접비		•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	- 간접비의 편성 비율은 연간 사업비 총액의 2%를 넘을 수 없음

【별표5】 BK21플러스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양식

BK21플러스 사업 참여인력 서약서

☐ **사업단(팀)명 :** (사업단(팀)장 :)

☐ **참여자 성명 :** (생년월일 :)

☐ **참여구분 :** 참여교수 / 신진연구인력 / 산학협력 전담인력 / 참여대학원생

상기 본인은 BK21플러스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훈령과 규정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BK21플러스 사업 참여자로서, 사업 훈령 및 지침 상 명시되어 있는 참여 자격 기준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것을 확인합니다.

2.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단(팀)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비롯한 사업비와 관련한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라 충실히 준수하고 집행하겠습니다.

3.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인건비와 관련한 아래의 유의사항을 항상 준수하며,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 및 사업비의 목적 외 집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각 개인의 통장·도장 일괄 관리 및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
✓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등 부당한 지시·요구 확인 시 관련 기관에 즉시 알림

년 월 일

성명 (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귀하

<한국연구재단(인재양성진흥팀)>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2014. 2. 13 제정
2014. 12. 17 일부개정
2016. 7. 2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27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각 사업단(사업팀을 포함한다)에서 BK21 플러스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 법령 등의 준용)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예산 회계 관계 법령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회계 일반사항

제3조(사업단의 회계)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회계 연도) 사업비 관리 회계 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 사업기간은 2013년 9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5조(사업단의 계정) 사업비는 사업단별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수혜대상) 사업비는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제3장. 사업비 관리

제7조(사업비 중앙관리) ① 대학은 사업 분야에 관계없이 총 사업비를 산학협력단 회계에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BK21 플러스 사업 계정"을 설치하여 중앙관리 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과 또는 사업단의 장 및 내부 구성원 명의의 계좌 개설 후 사업단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대학 내 부설 연구소 등을 통해 관련 사업단의 사업비를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사업비는 계획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시설 및 교사 건축·보수비 등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대학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연도별로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출 방식) ①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연구비카드를 활용하여 집행하고 관리한다. 다만,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인건비(신진연구인력 및 산학협력 전담인력), 회의수당, 전문가활용비, 성과급 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집행한다.

② 계좌이체를 통한 집행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여비, 강사료 등의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한다.

③ 단일 구매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 성과급, 전문가 수당 등 속인성 경비, 간접비는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대상에서 제외하며,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업비 지출시 일체의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 가능한 거래증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2. 각종 세금계산서(발생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명기), 전자세금계산서
3.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⑤ 계약의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다.

제9조(사업단의 회계 및 계정) 대학의 장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단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단별 계정과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출관리) ①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없이 지출할 수 없다.

② 사업단에서 사업비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이하 원인행위라고 한다)을 하고 산학협력단에서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 또는 지출행위를 한다.

③ 예산의 집행 시 원인행위와 지출행위는 동일 사업 연도 내에 발생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행위 및 그에 따른 거래행위가 해당사업년도에 발생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출행위가 수반되었을 경우에 한해 당해 사업 연도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한다.

④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제11조(사업비 편성 원칙) 사업비는 훈령·지침에서 정한 항목에 맞추되, 합리적인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예산편성비율) 사업비의 예산편성비율은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3에 따른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등 정부부처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에 대하여는 훈령 별표3의 각주 제4호에 따른다.

제13조(사업비 변경) 사업비 항목 내 또는 항목 간의 예산 변경은 대학 내 자체 승인에 따라 처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항목별 최소 및 최대 지원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과급 및 간접비는 증액할 수 없다.

제14조(집행 잔액 방지) 사업단의 장은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 수정을 통해 집행 잔액을 방지한다.

제15조(예산의 집행) 지침 제27조에 따라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다.

1.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2.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3. 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4.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5. 국제화경비
6. 사업단 운영비
7. 교육과정 개발비
8. 간접비

제16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학기별, 분기별, 월별 등 지급 기준은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정하여 지급한다.

② 입학한지 2년 이내의 석사과정생 및 입학한지 2년 이내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월 60만원 이상, 입학한지 4년 이내의 박사과정생 및 입학한지 6년 이내의 석・박사통합과정생은 월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석·박사 통합과정생에 대한 학칙 상 별도의 구분 기준이 있는 경우, 입학한지 6년 이내의 석·박사통합과정생에 대하여 그 기준에 따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대학원생의 휴학・자퇴・학기 중 취업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최소한 1개 학기 이상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국가재정지원사업에 의한 대학원생 지원비로 간주되므로,「학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국가재정에서 대학원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 때 상한선 초과 여부는 타 국가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본 사업의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그 외의 성과급 등 인센티브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⑤ 교내장학금 또는 기업 등 외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인정하나, 교육부 「글로벌 박사 양성사업」 등 BK21 플러스 사업과 이중 지급을 제한하는 사업으로부터 장학금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⑥ 그 외에 대학원생 연구장학금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의 과학기술 분야의 사업단, 글로벌인재양성 사업단, 특화전문인재양성사업의 과학기술 분야 및 과학기술 기반 융복합 사업단의 경우에는 참여대학원생 수의 70%를 초과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없다. 과학기술 분야의 사업팀 및 인문사회 분야의 사업단 또는 사업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한다.
2. 외국인 학생의 경우 연구과제에의 참여, 학술문헌 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하면 지원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지원대학원생의 연구실적 등을 판단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지급기준은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연구장학금은 학생별 개인계좌 입금, 장학증서 교부 및 학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며 연구장학금 성격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제17조(신진연구인력 인건비) ① 신진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퇴직금 및 4대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2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리서치 펠로우에 대해서는 본 지급단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건비 외에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 기관부담금을 신진연구인력 지원비에 추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건비 중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월 지급액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여 실제 퇴직시 지급한다. 이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월 지급 기준액(250만원)은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월 급여액은 월 230.8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을 위해 유보했던 금액을 인센티브의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퇴직금 관리를 위한 산학협력단 통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사업연도 종료 시 해당 사업연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충당, 퇴직 시점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다만, 해당 참여인력이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통장으로 이관된 금액은 사업비 통장으로 환입 처리한다.

제18조(산학협력전담인력 인건비) 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고용하는 인력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

② 급여는 채용 인력의 전문성, 대학 자체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개인부담금 및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계상·집행하며, 퇴직금 충당 및 지급 절차는 신진연구인력 지원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9조(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① 실험실습비는 당해 사업단의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소모성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구입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② 사업단은 산학협력과 관련된 창업 및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비 등 관련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국제화경비) ① 국제화경비는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포함한 참여대학원생의 해외학회 참가,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 해외학자 초빙, 해외 장·단기 연수 경비, 국외 및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개최경비, 해외 특허출원 및 등록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의 단독 해외 연수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2.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의 단독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 연수는 집행할 수 없다.
3. 대학원생 중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4. 개인사유로 인해 대학원생이 동반되지 않은 기간 또는 해외학회 및 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여행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의 해외 체류에 대한 여비는 일절 지급할 수 없다.
5.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 및 참여교수의 여권 발급 수수료 등 개인성 경비는 국제화경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
6. 해외연수는 선발기준, 지원기준,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의 자체규정 마련 및 위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7. 여비(항공료, 체재비 등)는 대학 여비 기준(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이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한다. 다만, 대학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산학협력단 또는 사업단에서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 및 집행할 수는 없다.
8. 대학 자체규정에 따른 증빙서류 외에 일자별/인원별(참여교수 동반 시 해당 교수 포함) 상세 계획 및 활동내역이 포함된 연수계획서, 연수결과보고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구비된 연수계획서 및 연구결과보고서 등이 미흡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 이내의 단기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학회 참여 및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를 지원한다. 다만, 디자인・영상 분야는 국제전시회 출품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
2. 해당 대학 여비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항공료 및 여비, 수업료, 시설이용료 등을 집행할 수 있다.
3.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는 지침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로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술대회(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를 포함한다.) 참석과 관련한 경비와 워크숍, 세미나 등의 단순 행사 참석목적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디자인・영상분야의 경우 국제 전시회 출품활동으로 대체 가능

4.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5.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여비(학회참가, 단기연수)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7. 해외기관으로의 단기 연수는 참여대학원생이 MOU체결 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공식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이 가능하며, 참여교수는 연수 대상 학생의 지도교수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8. 예산운영계획서에 기재된 벤치마킹 대학과의 워크샵은 연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

④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수기간 15일을 초과하는 장기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항공료 외에 수업료, 숙박비(기숙사비 및 홈스테이 비용),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교육훈련비로 집행할 수 있다. 이 때 위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른 금액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장기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 내의 체재비(필요한 경우에는 수업료를 별도로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해외인턴쉽 활동경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에 따른 국외 체재비를 지급한다.
3. 장기해외연수 시에는 동반 교수와 관련한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⑤ 해외학자의 초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 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때 지급 기준은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2. 해외학자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 해당 학자 이력사항 등 을 포함한 사전 기안 후 시행하며, 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내역, 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그 외에 출장비 산정 기준의 초과분 또는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비용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4. 해외학자 강사료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대학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 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의 사업 신청서 또는 연차별 예산 운영계획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외 기관과 온라인 강의 및 수강에 대한 관리 주체 및 체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학자의 원격 화상강의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 해외학자 초빙·활용과 관련한 경비는 실제 활용 기간을 고려하여 과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과도한 지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⑥ 기타 사업단 국제화와 관련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국제학술행사를 포함한다.) 경비(회의장 대여료, 행사개최비, 회의비, 다과비, 인쇄비 등)를 집행할 수 있다. 단, 국제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하는 경우 3항에 따른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참여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지원 기준 및 세부사항은 3항과 같다.
3. 해외 특허 등록 및 출원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⑦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출입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항공료지급영수증(Invoice, E-ticket, Boarding Pass, 법인카드명세서 등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및 출장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단 운영비) ① 사업단 운영비는 사업비 총액의 10% 또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지침 별표 3에 의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급 비율은 반드시 준수하여야한다.

② 사업단 운영비는 인건비, 성과급, 국내여비, 학술활동지원비, 산업재산권출원 등록비, 일반수용비, 회의 및 행사개최비, 기타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건비는 사업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의 인건비로 사용되며, 퇴직금 및 인건비, 4대 보험 관련 경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2. 성과급은 사업 참여교수 중 우수 연구성과, 사업단 운영상 기여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원된다. 이 때 참여교수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실적 등을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사업단 자체 운영 규정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300만원(1차년도의 경우 15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급여 성격의 성과급(정기적 지급, 고정급 지급 등)은 집행할 수 없다.
(신진연구인력 또는 대학원생에 대한 성과급은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또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항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국내여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인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학술활동지원비는 논문게재료, 국내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일회성 참가비에 한한다.), 전문가 초청 자문료,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정보수집비로 집행할 수 있다.
   - 전문가 초청 자문료는 원고료, 강사료 및 위원 수당 등으로 대학 자체 지급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내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에 대한 번역료, 자문료 및 원고료 등은 지급할 수 없다. (동일 학과(학부제 운영대학의 경우 동일 학부) 소속 전임 및 겸임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에게도 지급할 수 없다.)
   - 사업 관련 문헌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및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 해당 도서는 전부 대학에 귀속하여야 한다.
   - 학회 종신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학회 후원금 성격의 금액, 사업 및 연구수행과 무관한 신문 등 정기간행물 구입, 국외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해외 출장 경비 등은 집행할 수 없다.

5.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는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및 참여대학원생 등 개인 명의의 특허 출원·등록비용은 집행할 수 없다.
   - 대학의 장 및 사업단의 장은 BK21 플러스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및 유지 또는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 BK21 플러스 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과제물 보고서의 판권, 교육과정 개편 또는 산학협력을 통한 각종 결과물 판권 외 각종 유형적 발생품의 관리는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담당한다.
   - 지적재산권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유로 하며, 지적재산권 사용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단과 산학협력단 합의하에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홈페이지 개설, 플래카드, 브로슈어 제작 등 포함),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BK21 플러스 사업과 무관한 물품 구입 비용, 홍보 기념용품 제작 비용, 언론기사 게재료 및 광고(신입생 모집 공고 등 포함) 비용 등은 집행할 수 없다.

7. 회의 및 행사개최비는 회의비, 각종 행사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 사업단에서 개최하는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 다과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비 카드를 통해 집행하며, 행사 일시·장소·참석자 및 회의내용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한다.
- 사업단 내부 구성원에게는 회의 수당 등의 개인적 경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행사와 관련 없는 식대, 행사와 관련이 있더라도 행사 당 1회를 초과하는 식대는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종일 행사 등 행사기간 및 일정상 부득이한 경우 행사의 목적, 참석대상, 세부일정, 소요 경비 등을 포함한 사전기안(사전 내부결재 필수)에 따라 추가 식대 집행이 가능하다.
- 주말 및 자정(24:00) 이후에는 회의비를 지출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단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할 수 있다.

[회의비를 집행할 수 없는 부당사례]

○ 회의장소와 전혀 다른 장소에서 회의비를 집행하여 그 사실관계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출장 중인 참여교수 등을 회의록상의 참석자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의 회의비를 청구하는 경우

○ 동일한 일시에 회의비를 수차례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회의비를 청구하는 경우

○ 식당 장부 등을 방법을 사용하여 식대를 일정 금액 선결제한 후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 간이영수증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증빙으로 회의비를 청구하는 경우

8. 그 외에 우수논문경진대회 등 사업단 내 행사를 통해 지급되는 일회성 포상금, 자체평가 시 외부위원으로 활용되는 전문가 초청 필요 경비 등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타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대학 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과정 개발비) ①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정보 수집비, 교재 개발비, 사례조사비, 외부전문가 활용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필요성, 목적, 근거, 결과물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 할 수 있으며, 내부 구성원(사업단 소속 학과)에 대한 수당 성격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

②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비 또는 용역비 등으로도 집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 참여교수 및 해당 학과 교수는 누구나 교재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과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구과제 형태로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을 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별표를 참고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각 대학의 정책연구과제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3. 내부(사업단 소속 학과) 구성원에게 인건비 및 수당성격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으나, 자체규정에 따라 원고료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강의(도서)자료의 단순편집 등에 대하여는 지급할 수 없다.
4. 외부 민간업체와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대한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용역기간은 사업 연차를 걸쳐 진행할 수 없으며 연차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연차별 사업비 정산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간접비) ①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대학의 사업단 총괄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사업단별 사업비 총액의 2% 이내에서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다.

②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또는 사업단의 행정직원 지원, 사무용 집기 구입, 각종 수수료 지원 등의 항목으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③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책임을 지고 대학의 자체 운용요령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한다. 이 때, 사용 잔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집행 관리하며, 집행 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업연도별로 결산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비 정산 및 결산보고

제24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 사업연도 중 발생한 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도의 예산에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단별 사업비 발생 및 사용내역은 연도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시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발생이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하되, 사업단운영비 내 성과급, 간접비로는 편성할 수 없다.

③ 사업비 공동관리 계좌 등에서 공동으로 발생된 이자 및 수익금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누어 사업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비의 이월) ① 사업비 잔액의 이월은 당해 연도 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및 발생이자를 더한 금액의 15% 이내에서 가능하다. 단, 1차년도에 한하여 이월가능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비가 이월되었을 경우에는 이월금액과 신규로 교부받은 사업비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차년도 사업비 교부시 전년도 이월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사업비로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비 및 이자의 집행 잔액은 원칙적으로 총 사업기간 종료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① 사업비의 집행내역은 사업비 집행 후 30일 이내에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 연도 종료월에는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미지급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실적 보고서를 매년도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2. 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집행되었던 사업비 항목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과정개발을 위한 용역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항 제4호의 단서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7.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집행되었던 사업비 항목 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 교육과정 개발 용역과제 인정 항목

항목	집행 가능 내역
인건비	○ 과제에 참여하는 박사급연구원, 전임연구인력수당,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수당 ○ 인건비 지급방법 : 참여연구인력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계좌이체를 하여야 함.(세금 공제 후 집행)
조사 연구비	○ 사례개발을 위한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기타 당해 연구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연구비 등
전산 처리·관리비	○ 당해과제 수행에 관련되는 프로그램 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등 - 정보D/B사용료,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 전용회선 사용료는 공공요금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처리(인터넷 포함) - 시험분석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
여비	○ 과제참여교수 및 연구보조원의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국외여비 집행 불가) - 여비는 출장 명령 후에 규정에 따라 지급 함. 출장명령서에 의한 출장 등 대학의 절차에 따라 지급한 출장여비의 경우 별도의 증빙영수증을 구비할 필요가 없음.(단, 항공료는 제외) ※ 해당 대학 여비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관련서류 첨부.
수용비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비, 복사비, 제본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우편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송금수수료 - 기타 연구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기술 정보 활동비	○ 사례개발, 교과목개발, 교수법개발 등 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아래의 경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해당 과제관련 도서만 인정) - 자문료 ※ 전문가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 기재 (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원고료 - 회의수당, 강사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사업단 소속 학과 구성원에게는 지급 불가) ※ 해당자에게 원천 징수 후 금액을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 - 회의비 지출시 회의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구비

BK21 플러스 사업 사업관리운영매뉴얼

발행일 : 2016.9.7
발행인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발행처 : 한국연구재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집필진 : 인재양성진흥팀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인재양성진흥팀(전화 : 042-869-6449)